

## 2. 50년대 대만 백색공포의 시대 배경

1949년, 국민당 정권의 잔여세력은 대만으로 물러났다. 1950년 3월 1일, 형식상 총통직위를 사퇴한 장개석은 '全黨 全民'의 요청으로 '복직'하여, 타이뻬이 국민당 정부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타이뻬이 국민당 정부가 직면한 정세는 매우 험하였다. 먼저, 내전에서 참담하게 실패한 결과, 권력 인사 조직에 커다란 혼란이 생겼고, 당·정·군의 사기가 떨어졌다. 다음으로, 1947년 2·28 사변이래 지속되어 온 군·민 사이의 긴장 관계였다. 그 다음, 대륙 전쟁터에서 전면 승리한 紅軍이 여세를 몰아 대만을 침공해 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 정세를 소극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이른바 애치슨 보고서가 이때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곤란한 정세 하에서, 타이뻬이 국민당 정부는 궁지를 빠져 나올 방도를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면, 그들의 투쟁 태세는 어떠하였는가?

1948년 제1차 국민대표대회에서 '비상시 동원에 관한 임시 법령(動員甚戈亂時期臨時條款)'에 대한 결의를 강행하여, 총통 개인 독재의 기초를 다졌다. 장씨가 복직하기 전, 1949년 5월 1일, 전도에 호구 총조사를 실시하였다. 5월 25일, 군사계엄령을 발포하였다. 이밖에도 유관한 법령들이 발포되었다 : 국가 총동원법, 정치 반란 조례, 動員甚戈亂時期 비첩 숙청 조례, 대만지구 계엄시기 출판물 관제 관법, 비상시기 인민 단체법 등, 냉엄한 억압체제를 갖추어 갔다.

타이뻬이 국민당 정부는 이미 백색공포를 진행할 주관적 조건을 정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5월말, 여러 계통의 각지 군현 특무기관 수중에 이미 천여명을 헤아리는 '嫌疑犯'이 비밀리에 체포되어 있었다. 앞서 말한대로, 당시 타이뻬이 국민당 정부가 처한 객관적 정세는 상당히 불리하였는데, 무턱대고 全島에 군법을 발동하여, 민간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만약 이로 인하여 2·28 사변과 같은 동란을 다시 발생시킨다면, 수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커다란 전기가 돌발하였으니, 그것이 1950년 6월 25일에 터진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곤경에 처한 국민당 정부에 대하여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였으며, 트루만 정부의 對중국 정책은 이 대전환에 입각하여 수립되었다. 먼저,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하여, 대륙 홍군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조계획을 새롭게 개시하였다;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국방부·정보부의 현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온 힘을 다하여 지원하였으나, 이미 99%의 토지와 인민에 대한 잔여 정권의 중국 대표권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아무튼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경 정부가 국민당 정부를 대신하지 못하게 적극 저지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응하여 여러가지 책략을 펼쳤으며, 한때는 타이뻬이의 국민당 정부에게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정세 하에서, 국민당 정부는 마침내 숙청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이른바 '대만의 50년대 백색 공포'라는 소탕작전을 개시하였다.

공포 정책 시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50년대 대만의 백색공포가 지니는 세계사적 의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당시 국제정세 가운데 중대한 관련을 지닌 부분을 약술하기로 한다.

먼저, 국민당 정부의 보호자이며 대만 백색 공포의 간접 주도자인 미국 국내에서는 1947년부터 미국판 백색공포의 폭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당시 트루만 정부는 '충성 조사 법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포하였다. 문관위원회는 30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조사하였으며, 연방수사국에 만 4천명에 대한 조사문건을 넘겼다. 그 결과 2천명의 직원을 강제 사직시켰으며, 200여명은 '충성' 문제를 핑계로 내쫓았다. 지방 정부를 포괄하는 군정 기구는 전국의 각 동업조합, 노동조합, 민간 기업 단체 등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사상과 충성도를 조사하였고, '충성선서'를 강요하였다. 선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정치적·법리적, 심지어 종교적 박해를 가하였다. 당시 조사 받은 사람은 전국 취직자의 5분의 1에 이르렀다.

1950년에 이르러 이른바 '希斯간첩안'을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이 안을 계기로, 악명을 떨친 매카시 선풍이 정부와 사회에 휘몰아쳤다. 매카시는 '국내안전법'을 무기 삼아 '매카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50년부터 54년 사이, '잠재적이거나 드러난 미국 내부의 적'을 미친듯이 숙청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학계·예술계·신문계, 심지어 정계의 저명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이를테면, 흑인 해방 운동 투사 杜波伊思, 저명한 가수 羅伯遜, 중국인민의 벗 에드가 스노우(紅星照耀 하의 중국 작가), 명배우 卓別林, 미국 원자탄의 아버지 臭本海默, '미국 인민의 역사'를 쓴 休巴曼 등. 그 뒤 매카시는 마침내 민주당 정부를 把矛頭指向, 트루만 정부의 국무장관 애치슨을 '빨갱이 두목'이라고 비난하고, 민주당 집권 20년을 '미국을 반역한 20년'이라고 매도하였으며, 馬歇爾와 트루만을 '미국에 빨갱이 집단을 건설하는 데 도와 준' 원흉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쯤 되어, 공화당 정부는 비로소 매카시의 움직임이 부르즈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으로, 헌법을 위반하였으며, 통치집단 내부의 혼란을 조성하는 짓이라고 보고, 1954년 말에 이르러 매카시를 견책하는 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매카시 위원회로부터 해방되었다.

전지구적 반공 전략에 있어서, 이 시기에 미국은 지역 반공국가 조직을 주도하였다: 1949년 북대서양 조약 기구, 1950년의 한미 공동 방위 협정, 1951년 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태평양 안전 조약, 같은 해 미일 안전보장 조약, 1954년 중(대만)미 방위 협약, 동남아 공약 조직, 1955년 바그다드 칸막을 통한 군사 협약 등. 이러한 전지구적 반공 협력 체계에 있어서, 주목할 사실은 일반적으로 낙후 지역에 백색 공포의 폭풍이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특히 유명한 것은 남한의 이승만·박정희 정권(전두환·노태우 정권에도 계속되었다), 월남의 吳廷炎, 태국의 內沙里 정권,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菲律賓麥格塞塞 정권, 인도네시아 소합탁 정권 등.

이상과 같은 내외 정세는 타이뻬이 국민당 정부의 50년대 백색 공포 정책의 시공간적 배경이 되었다. 동시에 국민당이 대만에서 저지른 피비린내나는 폭정을 나타내며, 단순한 내부정책이 아니라 미국 패권주의가 주도한 전지구적 정치 구도의 한 부분이었다.

### 3. 대만 백색공포의 실태

'백색공포'의 주요한 시행대상이 일반적인 좌익인사와 좌익운동이었다. 전후 신식민지 사회성격 민족해방과 민주개혁 운동을 쟁취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이념을 지도 원리로 삼는 단체들이, 국경을 따지지 않는 백색공포 정책의 표적이었다.

타이뻬이 국민당 정부가 대륙 전쟁터에서 패배한 탓에, 그들의 '恐共·恨共'은 심각한 것이어서, 내전 반대, 국·공 학합, 국가 통일, 평화 건설, 인민의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움직임을 공산당 간첩 활동이라고 몰아 붙이면서, 숙정 대상으로 삼았다. 그 정책은 잔혹하기 짝 없었다. 아래에 국민당 정부의 백색공포의 구체적 특징을 보이겠다.

1)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인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심지어 문화와 정신생활 까지 억압하였다.

2) 대륙 시기의 여러 계통의 '사상통제' 특무 단위 기구를 동원하여, 공작 집행 과정에 서로 경쟁적으로 감시하도록 하였다('軍統' '中統' 'cc' '藍衣社' 등)

3) 특히 군대 내의 통제 계통을 중시하였다. 3군 총사령부에 각기 독자적인 법집행 단위가 있어서, '전시 군률'을 운용하면서 불온분자를 처단하였다. 군 내부의 政工 제도, 특히 '방위안보 계통'은 군 내부 공포정책의 획책·집행자였다.

4) 여러 갈래의 사상통제 특무 계통은 형식상 최고 내각의 '비상시 동원을 위한 국가 안전 회의(動員 甚戈亂時期 국가 안전 회의)'에 귀속되었다. 실제 지휘권은 장개석 개인의 손 안에 있었다(뒤에 아들 경국에게 넘어 갔다). 여기서 내리는 지령은 최고 권위를 지녔다(정치 안건의 최후 심의 역시 여기에 맡겨졌다).

이상은 제도·기구 측면의 상황이다. 사회 기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민정·경찰행정 쪽의 일방통행식 규정이 특히 많았다. 警民협회, 민중 服務站 설립, 匪諜自首辦法, 匪諜檢舉辦法, 五戶違保辦法, 국민신분증 제도, 임시 호구 등기 규정, 기관 인사 제도 중의 안전 규정 등등.

공포정책의 첫걸음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거리를 메운 선전 구호 : '공비와 내통하는 자는 죽이자!'(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반드시 이 구호를 스크린에 비추게 하였다). '공비·간첩이 당신 주위에 있다!' '누구든 공비·간첩을 검거할 책임이 있다!' '공비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공비와 같다!' 등. 정류장·시장 등 공공장소에는 늘 빨간 벽보가 나붙었는데, 내용은 그날 총살당한 공비·간첩의 이름·나이·호적/본관 등이었다. 잡지 등에도 '반공작가'들의 글이 실려, 공비·간첩의 '사악' '추악'한 면모를 묘사하였고, 노래를 통해서도 갖가지 '반공 영웅' 사례, 특히 공비를 검거한 '애국' 사례를 펴뜨렸다.

체포에서 심판까지, 백색공포정책 하의 정황은 어떠하였는가?

1) 체포기관은 경찰·헌병·특무 등 매우 많았고, 이들은 관할 범위를 따지지 않았다.

'법정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되었다. 이를테면, 체포하는 데에는 체포 영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신문하는 데엔 시간 제한이 없었다. 가족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었다. 고문도구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각지의 감옥에서 몇 달, 몇 년을 학대 받았다.

2) 군사법정으로 이송한 후에는 (50년대 초기에) 기소장이 필요없었으며, 변호사도 없었고, 방청도 할 수 없었으며, 판결 후 상소권도 주지 않았고, 때때로 판결서 읽는 절차도 생략하였다. 50년대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개선되기 시작하여, 변호사나 국선 변호사를 쓸 수 있었으며, 상소권과 판결서가 생겼다. 그러나, 당시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일반적인 직업 변호사는 감히 '반란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접근할 수도 없었다.

3) 사형 판결을 모면한 피고는 집행기관으로 보내진다. 규정상 반란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 군인감옥으로 보내지며, 군인감옥은 형식이 다른 분과기구들이 있다.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은 採行集中營 방식의 '綠島新生訓導處'이다; 집행 '感訓教育'……; 또는 각지에 '떠돌이'를 관리하는 이른바 職訓隊가 있는데, 특정한 단위 전문가가, 형기를 마쳤으면서도 계속 수감되는 정치범을 관리한다. 集中營 勞動營式 관리이든, 군인감옥에 가두어 놓든, 말할 것도 없이 참혹하다. 반란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人犯疏散辦法이나 大赦·特赦 등 減刑辦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950년부터 懲治叛亂案 조례가 발효된 이래, 딱 두차례 예외가 있었다. 첫번째로는, 이른바 건국 60주년을 기념한 특별 감형이 있었는데, 수천명 정치범 가운데 그 '恩典'을 받은 사람은 수십명에 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1975년 장개석이 죽은 뒤, 수백명의 정치범이 감형받아 출옥하였다. 이 외에, 감옥법 중 假釋辦法은 정치범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4) 더욱 잔혹한 것은,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계획적 假案이다. 어떤 사람은 '예방' 목적의 '으름장' 성격의 안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군대·교육계·공무원·문화계·소수 민족·화교·화교학생 등 관련 범위에서, 때때로 이러한 宪案이 출현한다. 두드러진 예를 들면, … 신병 훈련 중심안; 閩南 平和 師範案; 이른바 湖南幫案; 국민당 產業黨部案; 당산 교통대학안; 泰雅族 山地 청년안; 잡지 자유중국안; 말레이지아 화교관련안 등등. [...] 이러한 정책성 가안은 50년대 후기-60년대에 특히 많았다. 이 밖에, 情治 계통의 고위층의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 成案된 것도 있다.

5) 몇년 전 필자는 재일 한국동포 정치범(양심수) 원조기구와 한 차례 교류한 적이 있다. 필자는 일찌기 남한과 대만의 사회조직과 정권 체질의 같고 다른 점을 다룬 글 한편을 쓴 적이 있다. 그리고 두 정권이 정치범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그 가운데 관련된 부분을 적어 보겠다.

#### 공통점

- ① 통치자는 '정치범은 곧 사상범'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 죄수를 다루는 규범과는 달리, 사상과 의식에서 적대적인 요소를 중시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데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 ② 이를 위하여, '위험사상'의 가치관 체계를 씻어버린다. 강제적 방법으로 당사자의 인격 통일성을 혼란상태로 몰고 가, 죄악감·무력감을 느끼도록 한다.
- ③ 이러한 '도덕적' '심리적' 압력을 넣기 위하여 육체적 가학 수단을 써서 공포 본능을 자극하고 저항의지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 차이점

- ① 대만의 국민당 정권은 과거 역사에서 중국 공산당과 몇 차례 연합/투쟁을 치러 왔다. 따라서 사상투쟁의 기술 측면에서, 상대방의 '유연성' 공작법을 배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식상 남한의 '전향 제도'(전전 일본이 채택한 강제적인 사상 전향을 본 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유도' '감화교육' 등을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
- ② 육중의 공포 정책은 두 정권에게 중요한 수단이다. 대만은 비교적 큰 방, 集中營式의 집단 관리 방식을 선호한다. 목적은 집단 내부에 공포 효과를 감염시키면서, 내부의 이간과 반목을 노리는 있다. 남한은 독방에 가두어 개별적으로 탈진시키는 방법을 주로 쓴다.
- ③ 간단히 말하여, 사상·정신 관리 측면에서, 대만 방식은 비교적 음험하다. 남한은 일제식의 직접 고압적인 수단을 써서 강제로 굴복시킨다.

6)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 사람에 대해서는 번쇄하고 가혹한 이감 수속과 거주지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출옥 전 보증인 두명의 보증서를 요구한다(자녀는 부모를 보증할 수 없으며, 보증인은 일정한 액수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하고, 사람 보증 말고도 店保(?)를 요구한다). 이 보증서에는 출옥자를 관찰할 책임을 지겠으며, 재범할 경우 연대 처분을 받겠다는 서약을 명기하게 되어 있다. 보증서를 작성한 후 본적지에 가서 경찰기관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경비총사령부에 다시 제출하며, 마지막으로 국방부 군법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후에야, 감옥은 비로소 석방 증명서를 발급하며, 최후의 절차로서 선서를 한다.

본적지에 돌아온 후 특별 관리 명단에 끼게 되며, 생활하면서 각 항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컨대, 다달이 해당 지역 경찰기관에 보고하여 생활 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다; 열흘 이상 단기 여행할 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 파출소나 조사국 기관에서 부를 때에는 언제든 바로 응해야 한다; 위 기관은 수시로 주소지나 취업 장소에 사람을 보내 사찰할 수 있다; 심지어 당사자에게 서면 보고하게 요구하거나, 특정한 제목으로 의식이나 감상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취업하는 데에 매우 어려운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를테면, 의사·변호사·회계사 같은 자유 직업은 각 공회조직법에 반란죄를 범한 회원은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회원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원 신분을 잃으며, 출옥한 뒤 그 업무로 복귀할 수 없다. 공무원과 교육 분야에서는 복직 기회를 주지 않는다. 公司法에서도 반란죄를 지은 사람은 요직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복역 중 문제가 있을 때, 만기 후에 '留訓'이라고 하여 계속 구금할 수도 있는데, 기한이 일정하지 않다.

위와 같이, 검거·株連(연좌제 같은 것)·모함·사상개조·재판·집행에서 만기 출옥하기까지 반란죄에 대한 일관된 처리 방식을 통하여, 군중에게 선전하고 사회에 만성적인 공포 심리를 조장하였던 사실을 살펴 보았다. 반정부 사범, 심지어 '잠재'적인 반대자에 대한 언어적·심리적·육체적·사회적 폭압 조치를 통하여 당국은 대중 생활 속에 공포 분위기를 퍼뜨렸다. 수십년 동안 대만 민중에게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두려움, 냉감증 등이야말로 이러한 공포 분위기가 놓은 구체적인 결과이며, 마침내 정권 '방위' 전선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 바가 컸다.

#### 4. 대만 좌익운동과 국민당의 태도

국민당의 이론가들은 한 무더기의 '반란관련 제제법'들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내면서,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백색공포의 성과를 '또 다른 勝戰'이라고 떠들어댔다. 이것은 비록 선전문구에 지나지 않았지만 가치관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었다.

소위 서방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의 동의권'이라는 관념은 사실 '강요당하는 가치관'을 의미하며, 지배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심리적 표현이다. 국가는 사회부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항상적인 작은 혼란이나 국부적인 위기를 흡수함으로써 그것이 누적되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도를 정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력과 효율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정부의 조직형식과 사회구조 사이에 평형점이 있어야 하고, 각 항의 실제 시정(施政)에도 일정한 법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정권을 생각해보면 상술한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못하였다. 즉 충분한 '인민의 동의권'이 계획된 적도 없고, 충분한 사회안전장치도 없으며, 조직구조는 불합리하며, 정부행위와 사회의 필요 사이에는 일치점이 없었다. 때때로 진보를 방해하는 작용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여전히 원시적이고 수탈적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했다. 이러한 정권은 안정도가 극히 낮고, 항상적 위기를 갖게 된다. 모든 정치 체제 혹은 체계가 경제적 기초의 상황을 직접적인 결정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낙후되고, 생산력이 낮으며 분배가 불공평한 사회의 정치는 대개 일정한 안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항상 해소하기 힘들고 잠재적 긴장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배관계를 돌파하려는 의도를 가진 인민의 행위는 일단 모이면, 곧 혁신적·표면적 운동으로 변화하는데 이것이 곧 피압박 인민의 反정권운동이다. 이때 정권은 폭력이라는 직접 행위로 제도·규범의 부족을 보충하려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백색공포였다. 때문에 백색공포는 항상 정치

가 아직 낙후되어 있는 국가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비록 선진적 발전 단계의 사회라 하더라도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어 점차 정권의 안전장치의 부하력을 넘어서면 거대한 충돌위기가 생겨나고, 노골적인 백색공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차대전 이전,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나타난 파시즘이다. 파시스트가 정권을 잡은 이후 피로 썩어진 기록들은 지금까지도 전세계인들에게 악몽으로 기억되는 잔인한 역사이다.

이 정치적 폭풍의 원인은 앞서 말했듯이 양극화체제하의 시대적 분위기 외에, 2차 대전 이후 국공 내전에서 찾을 수 있다. 내전에서 패퇴하여 내려간 국민당은 대만에서 어느정도 태세를 정비한 후, 어떻게 대만 섬내에 잠재적 위기요소를 제거할 것인을 1차적 임무로 삼았다. 장개석 일파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대만의 지방주의가 아니라 대만 식민지시대 저항운동을 주도했던 좌익적 요소였다. 이들은 대륙에서 새로이 일어난 농농동맹의 기세에 고취되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대륙의 비밀공작체계와 연계하여 새로운 국면하의 대만좌익운동을 형성하였다.

근대 대만 좌익운동의 맹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지구적인 형세에 의해 추동된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국가간의 이익충돌이 빚어낸 결과였다. 이 전쟁은 자연히 승자와 패자를 냉았지만 승리한 국가 사이에 다시 새로운 이익충돌이 생겨났다. 그러나 전쟁전의 피압박민족, 비착취계급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행동지침으로 하는 좌익반제식민지 투쟁이 사상계몽운동에서부터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전선을 형성하면서 식민지사회의 기타 피압박계급(일부 민족부르주아, 소부르주아, 농민, 지식인 등)과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구축하였다.

대만의 식민지 좌익운동은 20년대 초기 일본과 대륙 유학생 단체의 학습운동에서 시작되었고, 민족 부르주아지의 민족주의 저항운동과 급속히 연계되어 때로는 공동투쟁으로 때로는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1919년 동경의 신민회, 1921년 상해의 대만청년회 등은 초기 계몽운동단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룹들이다. 20년대 식민지 투쟁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이 계몽운동은 점차 실천공간을 확장해나갔다. 10년 사이에 交化협회, 대만공산당, 대만농민조합, 적색구원회, 대만보라문예작가협회, 공우협조회 등이 잇달아 조직되었고, 총독부의 엄중한 압제정책을 무릅쓰고 각 전선에서 투쟁을 전개시켰다. 그들의 활동공간은 당시 정치현실의 유리한 조건하에 대만, 일본, 중국대륙을 넘나들었고, 운동이념은 민족과 계급이라는 이중모순의 해방투쟁이었다.

1936년에 이르러 일본정국이 전면적 중국침략전쟁을 선포한 시기, 대만의 모든 사회운동은 전시체제의 엄혹한 탄압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통계에 따르면 대만에서 15년 역사를 갖는 좌익사회운동에서 각 조직의 성원이 약 5만명 정도였다고 하니 그 외 단체 및 지지 인민까지 합하면 그 동원력이 상당해서 다른 정치단체를 훨씬 넘는 것이다.

대만사회운동은 초국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조직구조에 있어 일본, 중국, 소비에트적 성격이 공존하고 있었다. 정치현실에서 볼 때,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혈연·지연·문화적 전통에 있어서는 대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초기 대만청년들의 해외유학자는 일본과 중국이 가장 많았다. 이들 유학생 가운데에는 활동세력이 많이 있었고, 그곳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혹은 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두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유학을 갔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조직적으로 운동상에 일정한 양국의 인맥관계가 형성되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은 형태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발전단계, 역사적 배경, 국제관계에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학구열에 불타는 대만청년들은 기회가 있으면 달려가 서로 다른 운동형태와 조직방식을 체화시켰다.

가장 초기의 인물들은 彭華英, 許乃昌, 謝廉清, 謝文達, 範本梁 등이 있었고, 대만공산당 창당시기의 중심인물로는 翁澤生, 謝雪紅, 林木順, 蔡孝乾, 蘇新, 王萬得, 林日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일본과 대륙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들은 대북, 동경, 상해 사이를 열심히 오갔다. 세 곳에 걸친 운동과 조직 사이에서 그들의 조직문건과 학습문건은 중국어나 일어로 써어졌다. 일본에서 그들은 정당회의 투쟁 및 합법·비합법 현대 산업노동자운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에서 30년대 극히 복잡했던 반봉건, 반식민지 사회의 투쟁들, 특히 농촌무장투쟁 등을 목도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29년의 무정부주의 비밀단체인 대만흑색청년연맹, 1928년 대만공산당과 같은 단체들이 한편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경험과 인맥을,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사람과 국토가 갖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대만공산당은 일본공산당 민족지부로서 발족하였으나 준비기와 성립대회기간에 중국공산당의 중점적 지도와 한국인 동지의 협조를 받았다. 이러한 대만공산당과 일본공산당, 중국공산당 사이의 긴밀한 3자 관계는, 후에 비록 대만공산당이 일본 공산당으로부터 독립해나가 제 3인터네셔널 극동지역의 지속지부에 소속되었지만, 변함 없었다. 운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범문화협회와 농민조합 등 조직이 영도하는 노동자 농민의 대중활동, 혹은 기타 문화예술활동이 모두 일본, 중국대륙의 해당세력들과 일정한 연계를 유지해 나갔다.

상술한 일단의 역사에서 대만좌익운동가들이 처음부터 계급과 민족이라는 2중 모순 속에서 중국과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만 좌익 운동이 중국을 전승한다는 중국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심리의 경향은 비록 후에 일본 전시체제의 압박을 받아 억압되고, 1936년-45년의 신민화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여전히 전해져 내려왔다. 어느정도의 정치의식과 운동의 기억을 갖고 있던 40년대, 50년대의 대만사람들은 모두 대륙인들과 그들이 모두 漢(漢)민족이고, 이민족의 침입과 계급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동 투쟁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비록 당시 실질적 관계가 중단된 지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그들은 자각적으로 명확한 민족적 유대와 계급적 연대감을 갖고 있었다.

현재 50년대 백색공포의 희생자를 생각하면, 식민지시대 운동에 참여했던 중·노년층들

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본토운동에서의 진정한 중국을 경험한 적 없는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일어교육을 받고, 신민화시대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일본인의 경시를 받으면서 민족 감정을 갖게 되었고, 2·28사변을 겪으면서 급속하게 反국민당 정서를 갖게 되었으며, 대륙에서 일었던 혁신운동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하에 그들은 모두 진정으로 新중국을 소망했던 것이다.

2·28을 전후로 하여, 대만의 대도시 서점들에는 상해의 몇몇 좌파 출판사의 중문번역 서적들이 넘쳐났다. 당시 국공 항일합작관계가 아직 공개적으로 깨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30년대 문학작품부터 사회과학 계몽서, 심지어 마르크스-레닌 원전 등이 공개적으로 판매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상술한 중문서적을 전매하는 서점들이 이전에는 모두가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것들이었는데, 광복 후에는 새로이 등장한 국민당이 이를 접수하여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서가에는 비록 국민당 선전서도 많았지만, 소수의 대만공무원이 업무차 나왔다 가 필요한 책을 우연히 구입하는 것 외에, 보통 청년들은 극히 보기 힘들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좌파서적들은 모두 국민당이 파놓은 함정이고, 국민당 특무가 근처에서 누가 그 문제서적을 사가는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소문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당국의 초조함이나 불안한 심리와 관민 사이의 긴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경국이 직접 사상경찰망을 조직한 것도 사실 대만 청년의 反국민당, 親좌 경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한다.

## 5. 결 론

중국국민당은 한세기동안의 정당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폭력적 지배를 일삼아왔다. 전면적인 내전으로 대만으로 쫓겨난 후, 미국 패권구도하에 장기판의 졸로 남아있게 되었으나 동시에 효과적인 도구를 갖게 되었으니 그것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피보호권'이었다.

주체성을 팔아 도구성과 맞바꾸고, 결국에는 낙후된 지역의 횡폭하고 취약한 反인민 정권이 되었다. 이것은 냉전구조하에 권력을 보존하는 보편적 방식이었다. 인민에게 있어, 백색공포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라는 이중적인 비극을 의미하였다. 50년대에 대만 인들은 백색공포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제 이른바 탈냉전시기라고 하는 90년대에 들어 대만의 백색공포는 이미 역사속의 기록으로 묻혀버렸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백색공포시기 이후 대만 정세의 변화를 약술한 것이다.

70년대 이후 대만사회의 구조적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대만

자본주의는 당시의 개발독재체제하에서, 미국의 '준식민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50년에서 60년까지의 공포적 고압정책으로 양대 생산계급인 노동자와 농민의 합법적 자위권리를 말살하고 높은 착취율하에 빠르게 자본을 증식시켜나갔고, 그 결과 대만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대만 자본주의의 발전은 사회의 경제적구조를 변화시켰고, 관료특권 부르주아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구조와 모순을 낳았다.

80년대까지 집권당 국민당의 자기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목표는 원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혁명민주'정당의 舊체질을 개선하여 자본주의 형식, 민주적 통치하의 의회민주, 정당제도를 위주로 하는 기능성 정당으로 변화하려는 것이었다. 소위 대만민주개혁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88년 2대 통치자 장경국이 사망하기 1년전 38년간의 계엄령이 해체되었고 대신 국가안전법 시행이 공포되었다. 자리를 이어받은 이등휘는 국민당 본토화를 추동하여 91년에 총통에게 부여한 독재대권에 관한 임시 조항을 폐지하였다. 마치 대단한 민주개혁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개혁은 아직도 모순된 구조 가운데에서 계급적 제한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가 안전법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최고의 정치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계엄령 시기 제정되었던 반란관련 법령도 바뀌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입법원 국방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륙을 유일한 적으로 규정하는 간첩법이 통과되고 구체적 죄칙이 명문화되었다. 이 간첩법은 여·야 3당의 합의하에 제정된 것인데, 심의과정에서 자칭 대만 민주화의 공신이라고 하는 민진당이 매우 열심이었다. 당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직접 나가서 몇몇 인사가 중국대륙에 건너가 학술좌담회의에 참석한 것을 가리켜 적과 내통하는 죄를 범했다고 지목하기도 하였다. 대만 독립계통의 신문도 국가안전국이 곧 비첩안(匪諜案; 공비·간첩안)을 재정할 것이라느니 떠들어대었다.

그러나 더욱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부르주아민주주의적 관념들이 이 한계성과 허위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위 '국가안전'이니 '기본적 인권'이니 하는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모른다. 개념은 구체적으로 생동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념들이 도구, 심지어 무기로 변화하고 말았다. 우리가 대만에서 목도한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을 역사가 만들어내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한쪽은 국가안전이라는 이름하에 합법성을 가장하여 바를 실현시켰지만, 그 반대편에서 박해받는 쪽은 기본적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저항해야 했다.

물론 역사적 과정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국가의 안전문제를 훌시할 뜻은 없다. 그러나 집권자들이 국가안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적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유일한 정당성의 기초는 마땅히 사실이어야지 어떤 이론이 아니다. 국가는 인민의 국가이자 권리자의 사기(私器)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판단기준은 천부적인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군중의 공동이익이어야 한다. 물론 사회구조가 갈 수록 복잡다단해지면서 국가행위, 개인행위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논쟁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90년대 현시점에서 말하건데, 인민다수가 깨어있고 조직적 감시 역량을 갖고 있다면, 인민이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을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힘있는 국제적 공론을 형성하고, 각지 인민들의 정확한 비판능력을 배양하여 각국 통치자의 언론조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기억과 잔혹했던 세월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와 토론을 계속하는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주제 4 : 개발독재와 인권 - 나라별 사례연구

##### <발표 3>

## 전복활동금지법과 형법 - 동티모르 사례

아키히사 마츠노 Akihisa Matsuno  
(오사카 외국어대학 교수, 일본)

### 1. 인도네시아 점령하의 동티모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동티모르(East Timor)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점령 하에 있다. 1975년 동티모르를 침공한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를 강제 합병하였다. UN은 이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티모르를 여전히 포르투갈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5년 6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동티모르가 자결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을 지니는 비자치지역(non-self-governing territory)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티모르의 면적은 약 19,000 평방 킬로미터이며 현재의 인구는 85만명이다. 여기에는 10만명으로 추산되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약 20만명의 동티모르인들이 분쟁과 기근으로 죽어 갔다. 동티모르의 인권 상황은 아·태지역 내에서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이다. 비사법적 처형, 자의적 구금, 고문, 강간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1991년 11월 12일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해 자행된 산타쿠르즈 대학살(Santa Cruz Massacre)에서는 평화롭게 시위를 벌이던 약 270명 이상의 젊은은들이 살해당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탄압하는데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이때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놓해 동티모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전세계에 선전해왔다.

## 2. UN 특별보고관의 권고안

1992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고문 특별보고관이 폐지하도록 권고한 전복활동금지법 (Anti-Subversion Law)에 근거하여, (인도네시아 법원이) 평화로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동티모르 활동가에게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는 사태”에 인권소위가 매우 우려한다는 내용의 동티모르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UN 고문 특별보고관인 피터 코지만스(Pieter Kooijmans) 교수는 1991년 11월 동티모르를 방문했었다. 그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본적인 인권이 전복활동금지법하에서 제대로 존중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없고,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배하는 범죄들이 이미 현재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신형법도 지금과 같은 처벌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전복활동금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sup>1)</sup>

인도네시아 군대가 산타쿠루즈(Santa Cruz) 공동묘지에 모여 있던 수천 명의 평화적 시위자들에게 발포하였었던 지난 91년 11월 12일, 그는 동티모르의 수도인 딜리(Dili)에 머물고 있었다.

포르투갈의 가톨릭 민간단체(NGO) ‘동티모르에서의 평화는 가능하다(Peace is Possible in East Timor)’는 살해당한 사람 271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66명의 실종만을 인정하였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실시된 조사 결과 그 숫자는 56명으로 줄었다.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분과(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는 총 224명의 실종 사례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비사법적, 즉석 또는 자의적 사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베크레 월리 디아예(Bacre Waly Ndiaye)는 1994년 7월 동티모르를 방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인도네시아의 국민인권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이 사건을 조사한 아래, “살해당한 사람과 실종자의 상황을 해명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조직적 노력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항의하였고 보고서의 결론을 거부하였다.<sup>2)</sup> 인도네시아 정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활동해 온 동티모르 독립 운동가들을 구속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1) A Paz e Possivel em Timor Leste, 산타쿠루즈 이후의 동티모르 : 인도네시아와 국제질서(East Timor After Santa Cruz: Indonesia and the International Order), 리스본, 1993년 1월 11쪽

2) E/CN.4/1995/61/Add.1, 1994년 11월 1일, 특별보고관 바크레 월리 나이예(Bacre Waly Ndiaye)의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방문 보고서(1994년 7월 3-13일)

## 3. 전복활동금지법 (The Anti-subversion Law)

인도네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보안법은 바로 전복활동금지법이다. 이 법은 처음 1963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1969년 지금과 같은 법으로 제정되었다. 1963년의 대통령령은 냉전 시대 정권의 산물이었는데, 이 전문은 전복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을 수행하는 국가와 민족의 안전에 대한 위협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낳게 한 폭력적인 테러통치를 통해 수카르노(Sukarno)의 교도민주주의(Guided Democracy)를 대치하고 등장한 반공산주의 새질서(New Order) 정권은 계속해서 전복활동금지법을 이용하였다. 새질서에서 전복활동금지법의 희생자는 정부 또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온 재야 정치인, 학생 운동가, 이슬람교 활동가, 개혁적인 퇴역 군인, 인권 변호사, 언론인, 학계 인사 등이었다.

다음은 전복활동금지법에 따라 전복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sup>3)</sup>

1. 어떤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또는 활동의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에 가담한 자,
  - ① 국시인 판차실라(Pancasila)를 왜곡하고, 파괴하고 일탈하는 활동,
  - ② 국가 권력, 합법적 정부나 국가기구의 권위를 전복, 파괴 및 침해하는 활동,
  - ③ 일부 국민들 사이, 사회 전반, 혹은 인도네시아와 우방 사이에 적대감을 유포하며 분쟁, 갈등, 무질서, 소요사태, 불안을 유발하는 활동,
  - ④ 국민의 생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에 근거한 또는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산업, 생산 분배, 상업, 협동조합, 운송 등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며 혼란케 하는 활동.

이 법의 최고형은 사형이며 집행은 총살에 의해 이루어진다. 형법에는 경찰만이 구속과 심문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파괴활동과 관련이 되면 일반적으로 군부가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sup>4)</sup> 전복활동금지법에 의해 재판 받을 경우 형벌은 대개 더욱 무거워진다.

3) 국제앰네스티, ASA 21/01/95,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정치범과 법치, 1995 1월, 3-4쪽

4) 앞의 보고서 4쪽

#### 4. 전복활동금지법과 관련된 사례

이 법과 관련된 사건 중 악명 높은 것은 페르난도 드 아라우조(Fernando de Araujo)의 경우이다. 현재 29세인 그는 1992년 5월 25일, 전복활동을 이유로 9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죄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비방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의 통합을 반대해 온 동티모르 학생 조직인 르네틸(Renetil)을 만든 멤버중 하나이다. 기소 내용에는 모임을 주최하고 시위를 조직하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UN을 포함한 국제 조직에 정보를 제공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1993년 9월 29일 그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No.36/1993)에 따르면,

페르난도 드 아라우조의 구속과 판결 이후의 계속된 구금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세계인권선언’의 제5, 9, 19, 20항, ‘시민적 정치적 국제규약(B규약)’의 제7, 9, 10, 14, 19, 21항, ‘모든 구속과 구금 하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의 제10항에 각각 위반된다. 또한 그의 구금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출된 사례를 검토하는데 적용되는 원칙에서 범주 II와 III에 해당한다.

이 실무그룹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페르난도 드 아라우조는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양심수이며 1992년 리북 인권상(Reebok Human Rights Award)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는 수상식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갈 수 없었다).<sup>5)</sup> 그는 1995년에 영국의 전국학생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의 명예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sup>6)</sup>

죠아오 프레이타스 다 카마라(Joao Freitas da Camara)는 페르난도 드 아라우조와 함께 전복활동 혐의로 구속된 동티모르 학생이다. 그는 1991년 11월 19일 자카르타(Jakarta)에서 산타쿠르즈 대학살(Santa Cruz Massacre)에 항의하는 평화 시위를 주동하였다는 혐의로 1992년 5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3월 31일, 다 카마라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친구들은 우리들의 형제들이 총에 맞아 죽어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저항해야만 했다.”<sup>7)</sup>

산타쿠르즈 대학살(Santa Cruz Massacre)과 관련하여 가장 혹독한 실형을 선고받은 동

5) E/CN.4/1994/27, 1993년 12월 17일, 자의적구금 실무분과 보고서, 결정 36/1993(인도네시아)

6) TAPOL Bulletin No. 114, 1992년 12월, 21쪽

7) TAPOL Bulletin, No. 129, 1995년 6월, 23쪽

티모르인은 현재 32살의 그레고리오 다 쿠하 살단하(Gregorio da Cunha Saldanha)이다. 그는 산타쿠르즈 시위를 주동하였다는 기소되어 1992년 7월 딜리 (Dili) 지방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시위 중 인도네시아 군인에 의해 총상을 입었다. 그는 밤낮으로 심문을 받았고 검사들이 있는 앞에서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총상이 악화되어 더 이상 그들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이겨낼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심문한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몇 명의 고위 정부관료, 성직자, 기업인들의 이름을 대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였다.”<sup>8)</sup>

현재 45세인 프란시스코 미란다 브란코(Francisco Miranda Branco)도 산타쿠르즈 시위를 주동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1992년 6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비폭력과 평화의 원칙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동티모르의 내전이 발발한 후... 나는 더 이상 프레티린(Fretelin)을 포함한 어떠한 정당에도 동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나의 소신이다.”<sup>9)</sup>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그레고리오 다 쿠하 살단하(Gregorio da Cunha Saldanha)와 산타쿠르즈 시위를 주동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5명의 다른 동티모르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10)</sup>

#### 5. 형법 (The Criminal Code)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복활동금지법에 의한 재야 인사의 탄압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 대신 형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전복활동금지법과 비교하여 볼 때

8) 국제앰네스티, ASA 21/11/92, 동티모르: “법에 따라서(In Accordance with the Law)” 유엔 탈식민지 (Decolonization) 특별위원회에서의 발언, 1992년 7월, 4쪽

9) 국제앰네스티, ASA 21/01/95,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정치범과 법치, 1995년 1월, “그레고리오 다 쿠하 살단하(Gregorio da Cunha Saldanha)쪽을 보시오

10) 국제앰네스티, ASA 21/11/92, op.cit., p. 3

결코 덜 억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고문특별보고관 피터 쿠이만스(Pieter Kooijmans) 교수는 이미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에 반하는 범죄는 이미 현재의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형법 중 가장 악명 높은 조항들은 소위 ‘증오를 낸는 조항(Hate-sowing Articles, Haatzaai Artikelen)’과 ‘대역죄 조항(Lese Majesty Articles)’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네덜란드 식민지 하에도 도입된 것인데 독립 후에는 인도네시아의 형법에 포함되었다.

‘증오를 낸는 조항들(Hate-sowing Articles)’은 공공 질서에 위반되는 범죄를 다루는 형법 제5장 중 제154항-제157항을 가리킨다. 제154항은 “정부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 정부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표현을 공공연히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고 형량은 7년 징역이다. 제155항은 대중매체를 통해 제154항에서 금하는 사항들을 표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최고 4년 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제156조항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특정 또는 여러 집단에 대해 제154항에서 금하는 감정들을 표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최고 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제157항은 제156 항에서 금하는 감정을 대중매체를 통해 표현하였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위반 시에는 최고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있다.

‘대역죄 조항(Lese Majesty Articles)’는 형법의 제134, 137, 207, 208항을 가리킨다. 제134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최고 6년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제137항은 대중매체를 통해 제134항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 1년 4개월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7항은 “국가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최고 1년 6개월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고, 제208항은 대중매체에 의한 “국가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최고 4개월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106항은 동티모르인들과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 조항은 “분리주의 운동(separatist activity)”을 금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종신형이나 20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 6. 형법에 관련된 몇 가지 사례

동티모르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 전복활동금지법의 사용을 자제하려는 경향은, 1993년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자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가 재판에 회부된 이후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자나나는 동티모르 독립운동 단체들의 상부단체(umbrella organization)인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National Council of Maubere Resistance, CNR M)’의 의장이며, ‘동티모르 민족해방군(National Liberation Army of East Timor)’인 팔린틸(Falintil)의 최고사령관이었다. 그는 1992년 11월에 체포되었고 17일간 군부에 의해 비밀 구금을 당했었다. 그는 TV인터뷰를 통해 그의 동지들에게 항복할 것을 요청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는 변호사 선임을 거부당했고, 자신의 최후 진술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반란을 도모하고 불법 무기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전복활동금지법이 아니라 형법에 의해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그의 형량은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 20년 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자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는 1994년 9월 호주 유엔협회(UN Association of Australia)가 주는 인권상(Human Rights Award)을 수상하였다. 그의 수상 이유는 그의 “동티모르 민중을 위한 정의롭고 평등한 해결책과 인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한 투쟁” 때문이었다. UN 사무총장인 부토루스 부토루스 갈리(Boutros Boutros-Ghali)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92년 11월 체포된 이후 20년형을 복역 중인 무장 독립운동의 지도자 조세 자나나 구스마오(Jose Xanana Gusmao)를 포함해 구금 상태에 있는 동티모르인들에 대해서 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논의해 왔고, 그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조치들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해 왔다.”<sup>11)</sup>

자나나 구스마오는 지금 동티모르의 만텔라로 불린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여겨지고 있다. 1995년 7월 발표된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엠네스티의 최근 보고서 ‘동티모르: 폭력의 20년’에는 41명의 구속된 동티모르인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 중 누구도 전복활동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정부에 대한 적대감 표현을 금하는 형법 제154항에 적용을 받았고, 그들의 형량은 1년에서 4년까지였다.

가장 무거운 형량인 4년형을 받은 사람은 조세 안토니오 네베스(Jose Antonio Neves)였다. 그는 ‘분리주의 운동’을 금하는 형법 제106항과 그 외에 제156항, 제157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죄는 동티모르의 인권 침해 실태를 국제기구에 알렸다는 것 이었다. 국제엠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였다.

올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동티모르대학의 재학생인 조세 안토니오 벨로(Jose Antonio Belo)의 경우도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그는 피를 토할 때까지 교도관들에 의해 고문을 받았고, 목에 상처까지 입었다. 그는 95년 7월 9일 동티모르대학에서 평화시위를 주동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형법 제154항에 의해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5월 북방 대학(Northern Territory University), 다윈 대학(Darwin University), 오스트레일리아 대학(Australia University)의 학생회는 그와 또 다른 구속 학생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였다.<sup>12)</sup>

11) A/49/391, 1994년 9월 16일, 동티모르 문제: 유엔 사무총장의 경과보고서

12) Pegasus conference greenleft. news, 1995년 6월 1일

## 7. 신형법(The New Criminal Code)

새로운 형법에는 국시인 판차실라 (Pancasila)와 1945년 제정된 헌법을 위반하는 자와 공산주의를 선전 선동하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조직에 가담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냉전 시대에서 사용했을 법한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신형법'은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정부가 "공산주의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끊임없이 선전하는 것을 본다면 그 참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극우 (이슬람 교도)와 극좌(공산주의자) 뿐만 아니라 '극 중도파(extreme middle)'과 '제3세력'(extreme others, 인권과 환경 NGO들을 가리킨다)도 정부의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다. 군부는 국가를 전복하려고 준비한다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형태 없는 조직 (organization without a form)" - 인도네시아어로 OTB (Organization tanpa bentuk) - 이라 부르는 세력을 탄압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약 15명의 인도네시아 지식인들과 인권 운동가들이 이러한 조직의 조직원이라며 발표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민들조차도 더 이상 이러한 정부의 선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현정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무릅반사 (knee-jerk type)와 같은 반사적 반응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lt;발표 4&gt;

## 국가보안법 : 민주주의의 위협 - 필리핀 사례

르네 사르미엔토 Rene Sarmiento  
(변호사, 필리핀인권운동협의회(PAHR) 부의장)

필리핀에서 국가보안법은 명예스럽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2년에서 1986년에 이르는 마르코스의 독재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을 체포·구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박탈했으며, 민주헌정을 파괴해왔다. 그러나 마르코스 독재는 계속되지는 않았다. 1986년 2월 민주세력의 광범한 연대로부터 분출된 완전한 자유에의 외침앞에 굴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입헌민주주의로의 복귀도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국가안보 관련 법률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법률들에는 군과 경찰로 하여금 검문소를 설치하고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반명령 (General Order) 66호와 67호, 그리고 불법무기소지를 규율하고 있는 P.D. 1866호와 국가 예산의 40%에 이르는 부채상환을 규율하고 있는 P.D. 1177호가 있다. P.D. 1177호는 매년 예산 40%에 달하는 부채부담이 필리핀인들의 고용, 사회복지와 발전에 더욱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켜버린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영양실조, 실업과 빈곤은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새로운 국가보안법률의 법률들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에는 재판전 구금기간을 두배로 연장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272호, 정부전복죄(Crime of Subversion)에서 외부의 지원이라는 요소를 삭제함으로써 반란죄(Rebellion)와 다르지 않게 한 행정명령 276호, 지역시민군(Citizens Armed Force Geographical Units ; CAFGUS)으로 알려진 준군사조직을 설립한 행정명령 264호가 있다. 이 세 법률 중 행정명령 276호만이 의회에 의해 폐지되었다.

피델 라모스(Fidel V. Ramos)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더 많은 국가보안법률의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의회법안 1105호 범죄통제법(The Crime Control Act), 의회법안 206 내지 689호 테러방지법(The Anti-Terrorism Act of 1995), 의회법안 374호 국가신원정보체계법(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Act)이 하원에 상정되어 있다.

의회법안 1105호 범죄통제법은 1987년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자의적 체포, 정당한 이유없는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통신의 사생활권, 유죄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권, 보석,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에 대한 권리가 그것이다. 예컨대,

(a) 의회법안 1105호 제34절은 체포당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인지(personal knowledge of facts)'를 체포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reasonable ground to believe)'로 개정하여 영장없는 체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6년 대법원은 수사관의 현행범 또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당해 행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아닌 직접적인 인지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People v. Burgos, 144 SCRA)

(b) 의회법안 1105호 제36절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1987년 헌법상의 "누구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반하는 것이다.

(c) 의회법안 1105호 제37절은 중대한 범죄실행에 사용된 은행구좌에 대한 동결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1987년 헌법의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반하는 것이다. 제37절은 검찰이 당해 금융자산이 범죄실행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의회법안 206호, 689호 및 1995년 테러방지법은 적법절차와 사생활 및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동 법안은 수사기관에게 테러범에 대한 도청과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조직의 은행구좌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동 법안은 영장없는 체포의 경우 구금기간을 체포시로부터 72시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증거수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형사소추전 30일 동안의 피의자 구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회법안 374호는 국가신원정보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개인에 대한 모든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신분증명서 내지 주민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네 가지의 법안보다 더욱 나쁜 것은 필리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의해 마련된 헌법초안이다. 이는 '모든 국가보안법의 母法'으로서 1987년 필리핀 공화국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위험스럽다. 이 초안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조항을 개정하고, 이른바 '의무, 책무와 책임(Dutie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며, 인권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인신보호영장제도

에 대한 보장조항과 계엄령선포에 대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자연자원의 개발, 이용 및 공공재의 운용과 해외자본의 필리핀 투자에 대한 권한 행사와 관련된 민족주의적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헌법초안은 제2절 제5조에서 모든 필리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개념을 변질시켰다. 이러한 변질된 개념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권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즉 인권은 시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의 완전한 향유와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 마치 거머리처럼 짚은 그리고 심지어 오래된 민주주의의 피를 뺏아먹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의회나 독재자라 할지라도 새로운 형태의 국가보안법을 다시는 입법하지 못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독재에 맞선 오랜 투쟁 끝에 어렵게 쟁취한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인들은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독자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지속해서 국가보안법을 비난하고 저항할 것이다.

#### 주제 4 : 질의응답 및 토론

##### 시바라시아 라시아

먼저 저는 대만의 림슈량씨와 한국의 김선명씨와 같은 여러 양심수와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 회의를 참여해 주셔서 인권운동을 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격려를 얻었습니다.

말레이지아는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연 8.9%의 경제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상황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정부는 교육과 의료보건을 적어도 기본적 요구라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거조건이라든가, 토지의 권리 - 많은 동서 말레이지아 원주민들이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 들과 같은 것입니다. 실업률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매우 제한된 상태여서 독립적인 노동운동은 약한 상태이고, 주로 경제적인 요구 이상으로 활동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민·정치적 권리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특히 자의적인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개입하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지아의 대부분의 국가보안 관련 법률은,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식민지적 역사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식민 부국이었던 영국은 말레이지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국가보안 관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지아가 독립하였을 때, 초기 정부는 국가 안보 관련 법때문에 재판 없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구금하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40년 대에 만든 내부보안법과 같은 것은 말레이지아를 공산주의로부터 위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1960~70년대 수천명이 이러한 법에 의해 투옥되었고, 구금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몇년 동안은,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1987년 약 100여 명 정도의 사람을 국가보안법 관련으로 구속하였습니다. 94년 역시 같은 법이 적용되어서 '알카운동'이라는 이슬람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그 지도자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오늘날 40~60명 정도의 양심수들이 구속되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여권위조, 주민등록증 위조 등 형법상의 범죄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60~70년대 상황과 비교하면 정치범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성격을 가진 다른 법률들이 있는데, 마약거래나 다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4천명 정도가 이러한 법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데, 마약거래혐의가 2,800 여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반 범죄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 인권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한 것과 연관된 다른 상황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불가분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 정부 특히 수상은 국제무대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개발도상국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인권의 보편성을 공격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정부는 인권의 불가분성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합니다. 시민권은 완전한 경제개발이나 더 나은 발전이 있기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반론의 제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인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논쟁은 현재 문제가 되지 않으며 비엔나 인권선언에서도 명백하게 이 원칙이 거의 합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해외에서 이런 선언문에 서명하고 나서도 돌아와서는 언론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별로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권보편성에 대한 공격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국제적인 기준을 비판하는 쪽으로 가 있는데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인권의 기준도 나라마다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지 정부 측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인권운동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알고 있겠지만 말레이지아 인권운동가들 중에 일부는 아시아적인 인권철학이 아시아 고유의 문화나 전통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많은 쟁점을 만들어 냈고, 작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인권을 다시 생각하며'라는 회의는 회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말레이지아 인권운동은 그 회의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이 기조연설을 하도록 초청되어 우리 몇몇은 항의하기 위해 회의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회의가 실제로 구체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다루려고 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회의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지배력의 변화과정과 그것이 인권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즉 세계화와 인권의 관계였습니다. 두번째는 반대자들에게 인권은 보편적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별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권조약은 보편적입니다. 인권선언은 보편적입니다.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왜 보편적인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근거를 우리의 철학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철학이라고 말한 뜻은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 -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그런 전통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속적인 인도주의적 관점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직접 충분히 다뤄졌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근거를 구체적 역사에 내재된 가치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인권조약이나 선언이 서구 역사의 반영이라는 주장이 공격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 바블로 로이통방

여러분이 지도에서 인도를 보시면 히말리야 산맥이 동쪽으로 쭉 항해가면서 방글라데시를 넘어서 인도네시아와 겨우 너비 20Km로 연결되어 있는 띠 같은 지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쌈이란 지역인데, 지역적 역사적으로 남아시아가 아닌 동남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우연에 의해서 인디아 국가연합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인도에는 많은 종류의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아동노동의 문제, 카시미르나 편집지역의 인디아 국가연합으로부터 탈퇴하려는 운동, 카스트 신분제도의 문제 등 모든 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또 인도 지식인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동쪽의 문제는 충분한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즉 인도 정부가 이 문제를 덮어 두는 데 성공적이었고, 또한 단체들이 이것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외부의 일반인이나 인도 정부의 다른 지역 관리도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가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도 여권을 받는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아시아 인권자료센터 소속의 친구 도움이 아니었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군대특별법이라는 6가지 조항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보안군과 군대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은 법령입니다.

여러분이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안군의 가장 낮은 하급장교에게 여러분이 불법단체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쏘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제6조 '뉴델리의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보안군의 어떠한 행동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때문입니다. 이 법은 195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령이나 다른 조치가 있었지만 1955년에 이것이 의회에 통과되면서 정식 법령이 되었습니다. 거의 45년 동안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 동북쪽의 마니풀주에서는 군사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곳 골짜기에서 싸니발디라는 군사작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디아로부터 분리하려는 모든 반란군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인데, 인도군들은 매일 같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그곳 지역병원을 방문했을 때 매일 같이 죽은 사람들을 운반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몇장 찍어서 남아시아 인권자료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인 미즈 로마라는 사람의 집에 갔었습니다. 그 사람은 28세의 학교 여선생이었는데 사고 당시 8개월 된 아이를 업고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반란군이 중앙경찰군의 일부를 기습하려고 숨어 있다가 경찰군을 쏘고 도망갔고, 그 다음에 경찰군이 그 지역에 들어가 사방으로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선생은 그 지역

을 가다가 총에 맞아 몇시간 동안이나 길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 남편을 만나러 갔을 때, 완전히 허탈해 있었습니다. 8개월 된 아기는 죽은 엄마의 등에 업혀 엄마가 죽은 후 몇 시간 동안 누워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법정에 소송을 내자, 국제캠페인이라도 하자 했더니 남편은 '안하겠다.', '필요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반란군에 들어가서 다음 기습작전 때 반드시 민간지역 외에서 하라는 요청만을 하고 싶을 뿐이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 하나니 다 실바

각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서로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동티모르는 1975년 인도네시아 군부에 의해서 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인도네시아 군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책은 주민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 전쟁과 같은 방법을 써서라도 - 제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군 총사령관이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종의 총독부를 세웠는데 이 총독부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부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군부만이 실제로 존재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동티모르의 저항군과 인도네시아의 군부이고, 실제적인 통치책임은 인도네시아 군부에 있습니다.

동티모르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보기관들이 주거지에 침투해서 정치문제를 잘 모르고 정치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교육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동티모르 사람들로부터 군사작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거나 또는 첨보원 역할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주전에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현재 동티모르에 세 가지 기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모두가 특수군사작전팀들입니다. 이러한 작전부대 외에도 각 마을마다 지역 전투부대를 하나씩 주둔시키고, 그 부대가 그 마을에 데려를 가하고, 거의 공포상태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각 마을마다 인도네시아 군대 주둔을 가시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SGI요원들이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동티모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보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밤에 저항운동에 참여한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 체포하거나 합니다. 저의 형도 1980년에 실종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6월 10일 형을 포함한 600명 정도가 실종되었는데, 지금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6만 명의 인도네시아 농민들을 자바로부터 동티모르로 이주시켜서 마을에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농민들은 농민으로서 정착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부역

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그들은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샤오 치앙

중국인권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만, 몇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국가안보법을 도입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안보법은 1993년에 채택되었습니다. 1994년에 6월 4일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리펑(李鵬) 수상은 국가보안법의 세부 시행령에 대해서 서명함으로써 저항운동을 탄압하는 강력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저는 중국인권 상황이 갖고 있는 맥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인권 상황을 말하는 세가지 촛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미 많이 언급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오랜 문화에서 이어져 오는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정치 전통입니다. 두번째는 개발 독재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채택한 개발독재 전략을 추구하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특수한 것인데,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탈린주의적 공산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에는 인민독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권 침해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중국인들의 생활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현재 생활 수준은 70년대보다는 낮습니다. 개인적인 자유가 더욱 많아지고 있고, 아주 많은 면에서 개방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화된 인권침해는 아직도 국가에 의해서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거의 모든 중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유언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어제 양심수 어머니들과 함께 모여서 집회를 가졌는데, 중국에서 어머니들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협박과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없습니다. 당시 아직까지 법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가지 상황이 중국인권 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아주 극소수의 사실만 외부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한 조항만 읽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시행령이라고 불어 있는 이 조항이 얼마나 세부적인가를 읽어 보겠습니다. 8조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다른 활동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실의 왜곡 및 조작 : 구두 또는 문서로, 또는 인쇄물, 오디오, 비디오 매체를 통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나 매체를 제작하는 행동.
2. 국가안보를 사회조직 또는 기업 조직으로 만들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 3. 종교를 이용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

이러한 강력한 법은 잠재적으로 어떤 종류의 반정부 활동이라도 탄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이나 타이완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993년에 상하이에 인권운동가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단체를 등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7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고, 강제로 노동교화소로 끌려 갔습니다. 1994년 북경의 노동운동가 그룹이 또 다시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단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노동자인권보호전중동맹(勞動者人權保護全中同盟)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4명의 지도자가 구속되어 2명이 강제 노역에 끌려 갔고, 다른 사람들은 투옥되었습니다. 시양이라는 언론인이 6년 동안 투옥되었는데, 국가기밀 누설죄였습니다. 더 이상 실망스러운 소식을 말하지 않고, 희망의 말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안문 사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나, 문화혁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현재는 억압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공중(公衆)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보가 개방되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 세계적으로 증대되는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중국을 개방시키고 있고 이것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는 중국이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현재 국제사회의 구성원이고, 국제사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인권의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역 강대국이고, 한국과 관련국이며, 우리 모두와 관련된 나라입니다. 그럼으로 중국은 지역화되고, 세계화된 경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속에서 인권 침해 사실, 인권에 대한 존중 등이 보다 통합된 방법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강하게 연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최이 홍장

저는 대만인권협의회 대표로 왔습니다. 림슈량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국가보안법은 '공산주의 탄압을 위한 국가동원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은 198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대만에서 국가안보법은 두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반공주의 입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독립주의라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대만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권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어 왔는데, 현재 대만 인권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적인 인권 보호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대만의 인권 침해가 외국 노동자나 여성노동자에 관한 정도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혼에 관련된 여성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언론

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방 언론 TV, Radio가 지역의 인권 상황과 야당의 활동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엄령은 49년 동안 유지되다가 87년에 해제된 바 있습니다.

### 르네 사르미엔토

아주 간단하게 박 교수님 발표에 관해서 말하겠습니다. 개발독재와 인권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에 주요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는 언급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권한이 무엇인가가 빠져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를 보면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이데올로기를 증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법원이 영장없는 구속과 검문소 설치를 정당화 시켜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결정)이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로페니 세니툴리

민족자결권은 산드라씨가 언급했던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N현장, UN총회의 결의안, UN의 시민적 정치적 인권을 보면 민족자결권은 강조되어 있고,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족자결권의 한계라고 한다면 민족자결권이 이미 존재하는 국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에 대한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비엔나 선언도 민족자결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문제를 얘기하는데 민족자결권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기본적,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고영구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주 짧게 말하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성과 특수성은 항상 충돌하는 것

이 아니라 보편성 위에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권탄압의 빌미를 삼으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념의 대립이 약화된 지금에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권력자들은 종전에 탄압의 빌미로 삼았던 이데올로기문제를 특수성의 문제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발전의 단계라든지, 역사적 한계의 특수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권위주의적인 인권탄압기구가, 통치방식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어느 정도 권위주의 정부가 경제발전에서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경제발전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경제발전의 성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경제발전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보편성을 부정하려는 시도, 이것을 반대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이 논리를 깨야 합니다.

### 박홍규

아시아 인권침해, 또는 인권침해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가 앞으로 인권학 연구에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사법부가 인권침해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은 한국에서도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침해법,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문제점, 특히 사법부 자체가 보수적인 성격때문에 오히려 행정부, 입법부 보다 인권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아시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위낙 다양하고 많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인권을 어떻게 공통적인 기반 위에 세우고 그 인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세계 인권문제 해결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 주제 5

###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 - 아태지역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략

##### 아시아 인권운동의 현况과 전망

##### 인권운동과 민족운동과의 관계

##### 인권운동과 국제정치

##### 인권운동과 경제정치

##### 인권운동과 문화정치

##### 인권운동과 정치외교

##### 인권운동과 민족운동

##### 인권운동과 국제정치

##### 인권운동과 경제정치

##### 인권운동과 문화정치

##### 인권운동과 정치외교

##### 1.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의 현실과 전망

##### 2. 인권 '이념'의 발전과 실천

##### 3.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발표 1>

##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의 현실과 전망 -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의 전진을 위한 전략

박 원 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1. 서 론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도 기이한 일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여러가지 차원에서 찾고 있다. 첫째로, 종교와 인종, 역사와 전통,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다양성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둘째로, 지역인권기구의 창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정 숫자의 인권선진국들의 부재이다. 세째로, 이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창궐한 군부독재와 전제정치로 인하여 보편적 인권개념이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국제인권의 장에서 보면 정치적 후진국이 많은 아프리카와는 또달리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보편적 인권 개념에 대한 도전이 가장 거세다. 이것은 같은 식민지 경험을 하였음에도 아프리카보다는 서구열강의 직접적 영향력이 비교적 덜하였던 이 지역 국가들의 역사적 성격도 첨가 설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그 어떤 목표보다도 우선 순위로 두었다.<sup>1)</sup> 이 과정에 인권이나 정의의 가치는 유보되거나 희생되었다. 성장우선정책(Growth First Policy)과 국가안보제일주의는 아시아지역에서 하나의 유형병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독재가 번성하였고 인권은 짓밟혔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1) Caesar Espiritu, Law and Human Rights in the Development of Asia, Friedrich -Shiftung(FNS), Singapore, 1986, p.19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안보관련법률이 제정되었고 철저히 시행되었다.

성장우선정책은 이 지역에서 NIES를 놓고 일부 국가에서 경제번영을 누리게 만들었으나 한번 짓밟혀진 인권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복원되지 못하였다. 국가안보법 제의 명분이 되었던 냉전이 해소되었으나 공산주의의 위협은 또 다른 군사외적인 위협에 의해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어차피 과거에도 국가안보법제가 실질적인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국민의 탄압수단으로 절실했기 때문이었다는 배경을 고려하면 어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시아지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안보법제와 이로 인한 대량의 인권침해는 제대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응하는 규범과 연대행동이 대단히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규범이나 인권기구들이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적 인권 NGO들 역시 효율적 연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법제의 철폐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 전략을 토의하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로부터 인간안보로 전환해 가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해 갈 것이다.

## 2.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와 대응 규범

### (1) 국가안보형 인권침해의 아시아적 보편성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서 한국의 NGO들이 조직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심포지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sup>2)</sup>

1. 국가보안법이 전세계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2. 나아가 국가보안법 집행을 책임지는 특별기관들이 인권침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3. 국가보안법이 많은 경우 비상체제 또는 민간독재나 군부독재의 영속화를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4. 국가보안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탄압하는데 쓰여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 자세한 것은 조용환, “아시아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Korea NGO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유엔세계인권대회보고서, 1993.7.14, pp.8-13 참조.

5. 냉전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을 합리화하는데 실패한 바 있는 모든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논리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6.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평개로 심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람들의 범죄를 추궁하지 않고 면책하여 주는 관행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뿐만아니라 다른 세대를 위한 인권교육을 위해서도 이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7.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8. 우리는 유엔 인권기구들과 국제민간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고 믿는다.

이러한 결의문이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다. 아시아 전역이 국가안보 법제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가 대단히 보편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공산주의의 국내외적 위협과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 각국의 국가안보 법률들의 제정, 이 법률들의 혹독한 시행은 대량의 인권침해를 낳았다.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등에서는 과거 식민지적 법제를 승계하기도 하였다. 필리핀등에서는 최근 국가안보법이 폐지되었으나 실제 그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냉전의 소멸과 동시에 이러한 법제와 관행도 함께 사라지거나 약화되리라는 기대는 반드시 현실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 (2) 현행의 대응 규범과 그 문제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주의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실상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외부의 침략, 내부의 테러리즘등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형태로서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나라별 보고와 특별조사활동, 유엔인권이사회의 진정에 따른 심사결과등이 잇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권한과 활동은 대단히 제약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대량의 인권침해를 막는 데도 실패하였다. 유엔의 여러 인권관련기구와 그 권능은 실상 한 나라 안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여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량의 인권침해를 막는 데는 무력한 것이었다. 이러한 무능은 주권불간섭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국제법 관념과 유엔의 정치적 성격에서 우러나오는 태생적 한계에 다름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채택되어 국제인권규범의 기초가 되어 있는 국제인권규약(ICCPR) 등도 이에 대하여 충분하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못하다. 국제인권규약 제4조는 국가의 비상시기에는 인권의 일정한 제약을 허용하면서 그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국가의 운명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가 있고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때에

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법하에서의 그들의 의무에 반하지 않고 인종, 색갈, 성, 언어, 종교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엄격하게 그 비상사태의 정도에 조응하여 이 규약하의 인권보장 의무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 규약의 6, 7, 8, 11, 15, 16, 18조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없다.

3.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이용하는 어느 국가도 즉시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에게 어떠한 조항에 대하여, 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종결한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은 비상사태하에서 인권의 예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절차와 요건, 사후 통보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절대로 제약을 허용하지 않는 권리(이른바 non-derogable rights)를 열거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현행 국제인권규범들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비상사태 선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권이 인권이사회에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비상사태에 관한 통보를 받은 당사국 또는 인권이사회가 어떠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어떠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비상사태의 남용에 대한 견제가 불충분한 것이다. 비슷한 조항을 가진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경우 다른 당사국이 한 당사국의 규약 위반을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등이 비상사태선포를 남용한 그리스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여 그리스 정부에 곤욕을 치르게 한 사례들이 있기는 하다.<sup>4)</sup>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은 그나마 이러한 통제장치마저 없는 실정이다. 둘째, 오늘날 많은 아시아국가들의 국가안보법률은 결코 위 조항으로 다룰 수가 없다. 인권억압에 훨씬 교활해진 나라들은 비상사태나 계엄령 대신에 통상적 법률에 의해 같은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 아시아 여러나라의 국가안보법률은 사실상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통상적 법률이라는 틀로 전화(轉化)시킨 것에 다름아니다.셋째, 국가안보에 의한 인권침해는 비밀경찰의 존재나 강화, 통상적 형사소송절차의 예외, 사찰과 도청의 합법화, 사법부에 대한 유형, 무형의 압력, 행정과정의 불이익등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어폐로치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법률에 대한 별도의 국제협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자세한 것은 Rosalyn Higgins, "Derogations Under Human Rights Treaties",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76-1977*, Oxford University Press, p.281 이하 참조

4) 이른바 Greek Case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그리스 군사정부가 행한 통지가 비상사태하에서 정지되는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적시하지 못했고 그 통지가 합리적인 시간내에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자세한 것은 Buergenthal, "The Greek Case before the European Commiss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62, 1968, p.444이하 참조

### 3. 아시아에서의 지역인권보장체제 수립 논의

#### (1) 창설의 논의 과정<sup>5)</sup>

아시아에서도 정부간 지역적 인권보장체제를 창립하자는 제의와 논의는 이미 여러차례 진행되었다. 이 논의를 주도한 것은 유엔과 LAWASIA였다. 유엔은 당초 지역적 인권기구의 보장에 관하여 1982년 콜롬보에서 이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엔은 그 이상 이 분야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법학자와 실무 법률가들로 구성된 LAWASIA는 가장 끈기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초로 뉴질랜드의 Chief Commissioner of Human Rights였던 P.J.Downey가 1979년 콜롬보에서 열린 LAWASIA에서 제기하였다. Downey는 그 회의에서 종국적으로 전체 아시아지역의 인권기구를 설치하는 첫 단계로 소지역(sub-regional) 인권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유엔이 주최한 1982년 6월의 콜롬보 회의에서도 거듭되었다. 이 회의에서 D.H. Geddes 박사는 아시아의 다른 대륙과의 여건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아시아의 특성에 맞는 인권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국제민주법률가회(IADAL)의 1988년 회의에 참가하였던 말레이지아의 T. Rajamoorthy와 싱가포르의 J. B. Jeyaretnam은 아시아인권선언의 채택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88년 마닐라에서 열린 LAWASIA 상설인권위원회는 지역적, 소지역적인 다양한 레벨의 인권기구의 필요성을 토의하였다. LAWASIA는 1989년 5월 Western Samoa에서 Pacific Charter of Human Rights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아시아 내에서 소지역에서의 인권보장기구의 논의를 심화시켰다. 지난 1992년 세계인권대회 준비를 위한 방콕회의에서도 LAWASIA는 이 문제에 관한 워크숍을 열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 (2) 논의의 쟁점과 그 내용

그러나 지역적 인권보장기구의 창설에 대한 반대의 견해도 적지는 않다. 즉 인도의 K.P. Sarsena같은 사람은 현재 권위주의적 국가로 차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한 인권기구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국가들에 의해 인권의 증진이 아니라 인권의 억압을 위한 공모의 조직이 될 뿐이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의 인권보장기구는 가능성도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

유엔의 Commission on Human Rights 역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1987년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역기구를 만들지 않는 한 유엔이 먼저 앞서서 창설 움직임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엔은 다만 자문과 권고적 역할을 위해 이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하도록 결정하였던 것이다.

5) 이러한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Won Soon Park, *The Role of NGOs for Human Rights in Asian Countries, A Thesis Submitted in Ful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iploma in International Law of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2, pp.92-95* 참조.

이 반대의 논리도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로 가득찬 것은 아시아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훌륭하게 인권기구를 창설하고 운용하면서 선례들을 차츰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지역에서 그러한 인권기구를 만드는데 성공한다고 하여 쉽게 각국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고 이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적용상태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지역적 인권기구의 창설이 해롭다거나 무익하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지역기구가 창설된다면 그 유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절한 운용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례가 축적될 수록 차츰 실질적인 인권보장기구로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sup>6)</sup> 더구나 아무리 아시아지역의 권위주의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지역적 인권기구가 창설되면 그 안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독재와 인권유린을 합리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명과 합리화 자체가 궁색해지고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 더욱 인권개선의 압박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역인권기구의 창설은 아시아에서의 인권문제에 관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이 기구를 둘러싸고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 NGO들의 활동도 보다 활성화할 것이다. 이 기구의 활용을 위해 인권침해사건을 모니터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들이 거세질 것이다. 네째, 그러한 경험의 축적은 유엔인권이사회 기타 유엔의 인권관련기구의 보다 활용을 촉발시킬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 인권 NGO들의 유엔 인권기구 활용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후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NGO들에게 훈련과 경험을 제공해 줄 실험장이 생겨나는 것이다.

### (3) 아시아지역인권보장체제의 대안적 논의

정부간 지역인권보장체제 수립이 위와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몇가지 대안을 마련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쉼없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창설의 논의과정에서 거듭 주장되었듯이 비슷한 환경과 신뢰관계를 지니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부터 작은 규모의 인권현장과 기구를 만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기구의 설치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시아의 각국 정부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더구나 아시아 지역은 대단히 다양한 성격의 정부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에 걸치는 단일한 인권기구를 만드는 것은 당장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일단 가능한 소 지역(sub-region)들에서 먼저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 그 실험의 효과를 이웃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단계적 방법이 바람직하다.

둘째, <아시아인권NGO 회의(ASIAN NGOS CONGRESS)> 구상이다. 정부간 조직이 해

6) 과거 소련이 서방국가들과 헬싱키조약을 체결할 당시 인권보장과 그 감시를 위한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이 헬싱키 조약의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으나 그후 많은 감시단체들이 그 조약의 내용을 유포하고 인권침해를 항의하는 '플랫폼'으로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Tufton Beamish & Guy Hadley, *The Kremlin's Dilemma: The Struggle for Human Rights in Eastern Europe*, Collins and Harvill Press, London, 1979, p.35)

낼 수 없는 일을 민간단체들이 대신해 보자는 것이다. 이 구상은 지난 세계인권대회 준비를 위한 방콕지역회의에서도 제출된 바 있지만 구체적 결실을 얻지는 못하였다. 아시아 여러 국가와 민족의 다양성이 정부간 지역보장체제를 만들어낼 수 없게 만들고 있듯이 이 다양성이 민간단체들 역시 아시아 전지역을 카버할 수 있는 인권기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타일랜드, 홍콩, 필리핀, 일본, 인도등에 본부를 둔 지역적 인권기구들이 적은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아시아 전체지역을 하나로 묶어 활동하는 단체는 많지 없다. 대체로 동남아시아지역, 극동아시아지역, 이슬람권, 사회주의권등이 거의 별도의 교류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시아지역에서 지역적 인권단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인권단체들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국가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권NGO의 상황에서 <아시아인권NGO 회의>의 구상조차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간 체제에 앞서 민간체제의 수립이 앞서지 않으면 않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부간체제가 창설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 민간단체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지역적 차원에서도 <아시아인권NGO 회의> 같은 조직이 APEC, ASIAN등과 같은 지역기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력 없이 저절로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에 나설리가 없다. 이러한 영향력 확대에는 하나가 된 NGO모임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나중에 정부간 체제가 성립된다면 하더라도 활성화된 NGO 없이는 그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각국 NGO들과 이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지역적 인권NGO들이 인권침해의 모니터, 각국 정부에 대한 항의, 아시아 지역사회에서의 외교·경제 활동에 대한 제재등을 제안하고 선도하며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아시아인권NGO 회의>의 존재는 정부간 지역인권보장체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체제의 효율성, 집행력을 담보하게 마련이다. 셋째로, <아시아인권NGO 회의>는 비정부기구로서 한계가 있지만 인권보장체제로서 그 자체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각국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커뮤니케이션과 어필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단(fact-finding mission)을 파견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각국에 항의공문을 보내거나 지역언론에 이를 알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해당국가의 상품 불매를 조직화하는 등의 압력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지역 NGO들의 대다수 동의와 참가를 얻어낸다면 이 조직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적지 않을 것이다.

셋째, 아시아인권현장의 수준을 현재 확립된 국제적 규범보다 낮추어 아시아 지역의 권위주의 국가들의 동의를 유도해 내자는 의견도 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의 과정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이 지역 정부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제적인 인권규범보다는 온건한 성격의 인권현장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제안에 따르면 아시아인과 그 정부는 전통적으로 권리보다도 의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정부와 그 국민의 의무를 함께 다루는 '아시아 민족과 정부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f the Basic Duties of Asean Peoples and Governments)을 만들자는 것이다.<sup>7)</sup> 아시아 각국 정부를 설득하여 이 기구에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인권기구와 그 현장의 수준을 실질적으

로 낫추어 버리는 경우 국제인권규약이나 국제인권이사회가 보장한 수준에도 미달하여 차라리 기존에 존재하는 국제적 인권기구와 절차(international machinery)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의문도 가진다. 즉 아시아 각국으로 하여금 국제인권규약 등을 비롯한 협약에 대한 가입을 일반화하도록 만들어 그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자체의 인권기구 설치는 당분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대안은 선뜻 채택하기에 의문의 여지가 많다.

#### 4. 아시아인의 인간안보 보장을 위한 몇가지 제안

##### (1) 국제인권규약(ICCPR)등 각종 국제규약가입의 강제

현재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국제인권규약(ICCPR) 및 그에 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 비준 현황은 표와 같다.<sup>7)</sup>

이 현황에 따르면 아직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이 12개국으로서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선택의정서 비준국은 6개국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입의 수준은 다른 대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며 그만큼 국제인권규범이 아시아지역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가입 압력과 독려는 그만큼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규범에 대한 이해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인만큼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이러한 압력은 경제적 성장이 제법 이루어지고 교육수준이 향상된 국가이면서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먼저 행해지고 차츰 그보다 못한 국가들에게로 집중되어야 한다. 예컨대, 일본과 인도와 같이 선택의정서를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하며 더 나아가 타일랜드, 말레이지아등과 같이 아예 국제인권규약 그 자체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하여 비준의 압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
아프가니스탄	O	X
오스트레일리아	O	O
방글라데시	X	X
캄보디아	O	X
중국	X	X
인도	O	X
인도네시아	X	X
일본	O	X
북한	O	O
한국	O	O
라오스	X	X
말레이지아	X	X
미얀마	X	X
네팔	O	O
뉴질랜드	O	O
파키스탄	X	X
파푸아뉴기니아	X	X
필리핀	O	O
싱가포르	X	X
스리랑카	O	X
타일랜드	X	X
베트남	O	X

##### (2) 기히 가입한 규약의 준수 강제

국제인권규약과 그 선택의정서를 가입한 것만으로 그 준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인권규약은 각국이 그 실시 상황을 최초보고서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비판과 권고는 각국 정부에 구속력 있는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결정이 직접 해당국가의 기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이

7) T. Rajamoothy & J. B. Jeyaretnam, "The Need for an Asian Charter of Human Rights", in Conference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on Jurisprudence of Peac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and Indian Association of Lawyers, 1988, p.188

8) 1995년판 Amnesty International Report에 의함

현실이다.<sup>9)</sup>

결국 이러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결정이 해당국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그 국가내의 언론과 인권단체가 얼마나 활동적인가 하는 점에 좌우된다. 언론이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결정, 해당국 정부의 무성의와 불성실을 제대로 지적하고 이를 비판하며, 인권단체들이 국민여론을 조직하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 해당국의 국제인권규약의 성실한 실시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없이는 선택의정서 자체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음에도 아직 겨우 몇차례의 통보가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이사회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지, 무경험 때문에 개인과 단체들이 국제인권규약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3)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현상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명과 실무반의 구성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가 동아시아 전역에 전염병처럼 번져 있다는 사실은 이미 본 대로이다. 그러나 사실 국가안보가 인권의 제한과 유보 사유로 등장하기 쉬운 명분인 것은 비단 동아시아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관련 법률이나 제도, 기구와 관행이 인권을 침해하고 제약하는 모습은 제대로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있거나 보고되어 있지 못하다.<sup>10)</sup>

이러한 점에서 가장 먼저 착수되어야 할 것은 유엔인권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일이다.<sup>11)</sup> 아시아지역 나아가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실태를 먼저 파악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어서 실무반(Working Group)을 조직하여 현재의 국제인권규약 관련규정의 보완 또는 새로운 특별조약의 성안을 기초하게 하여야 한다. 최근 유엔의 재정 악화로 특별보고관의 임명에 제한을 가하는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특별보고관 임명이 쉽

9)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이 좋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의 인권NGO들의 부존재와 활동의 미약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일본과 같이 국내 NGO들이 그런대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국가에서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곤경에 처해 지리라는 예상때문에 쉽게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같이 아직 NGO의 활동이 본격화되지 못한 곳에서는 비교적 쉽게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10) 한 국가나 사회의 포위 또는 비상사태하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Mrs. N. Questiaux, Study of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Recent Developments Concerning Situations Known as States of Siege or Emergency",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E/CN.4/Sub.2/1982/15/27 July 1982 참조

11) 이러한 요구는 한국 NGO들이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조직한 심포지움에서 채택된 결의문에도 이미 나와 있다.

지는 않을 것이나 아시아 지역의 여러 NGO들이 연대하여 이 지역의 보편적 현상임을 주지시킨다면 불가능할 것도 아니다.

### (4) 아시아국가들의 국가보안법률 연구 및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감시단체(Watch-Dog) 결성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역적 인권단체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인권침해 사건을 모니터하며 긴급행동(urgent action)을 호소하는 단체들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노동권, 종교의 자유, 여성의 권리등 각 전문 분야를 다루는 단체들이 분화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인권침해사건을 주된 관심사로 하는 인권단체의 탄생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단체가 생겨난다면 아시아지역에서의 국가안보법제의 현실태, 그 법제와 국제인권규약과의 상치, 개별 국가가 국제인권규약을 가입한 경우 이들 국가의 인권이사회(The Human Rights Committee) 보고시 카운터 리포트 제출, 국가보안법제에 따른 인권침해의 모니터, 재판방청, 뉴스레터 발행과 긴급행동의 조직, 국가안보법제의 폐지와 이와 관련된 국가보안기구의 민주화를 위한 연구와 행동등을 맡을 수가 있을 것이다. 개별적인 세미나의 개최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이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여 침해받는 아시아인들의 인권 수호를 위한 하나의 센터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 (5) 군사·경제원조등을 통한 강대국의 인권탄압 지원 중단 요구

그동안 미국등 서방의 강대국들이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관계 또는 내부의 계릴라의 위협등을 내세우며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기도에 협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강대국의 협력은 바로 그 수원국(受援國)의 국민에 대한 탄압을 원조하는 일에 다름아니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의 위협, 내부 공산계릴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안보법제를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대량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국가에 대해서도 미국은 서슴없이 이들 정권을 도와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sup>12)</sup>

냉전의 붕괴에 따라 이미 공산주의국가들의 위세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시아에서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걷혀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아직도 군사정부가 지배하고 있거나 군부의 입김이 강하게 온존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 더구나 과거 번성하였던 독재정권이 무너지거나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도 여전히 과거의 제도와 관행과 기구는 살아 남아 인권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환경위기, 경쟁력 강화 등을 하나의 국가안보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sup>13)</sup>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이러한 나라에

12) 예컨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지원은 다음의 책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Raymond Bonner, Waltzing With a Dictator: The Marcoses and the Making of American Policy, Macmillan, London, 1987.

대한 원조는 바로 인권침해를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내 인권단체들로 하여금 그 원조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 4. 결 론

아무리 민주주의 단계의 차이와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발전의 계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ASEAN 또는 APEC과 같은 지역적 경제협력기구들이 완만하게나마 발전하고 있고 경제 통합의 논의가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경제협력과 통합의 논의는 결국 경제외적인 정치·사회·문화적인 협력과 통합의 논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여기에 포함될 것임은 물론이다.

이제 아시아의 정부들 스스로 이 지역에서의 인권기구 논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즉 1993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아시아국가의 대표들이 세계인권대회와 관련하여 방콕에서 모인 지역회의 결과 채택한 방콕 선언에서 “아시아에서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려는 지역적 장치를 수립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를 언명”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온 세계는 모든 면에서 더욱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보편성 개념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국가들의 입장은 점점 수세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권의 기치(旗幟)는 외국이나 국가, 그 아무도 아닌 바로 국민들 자신에 의해서 제대로 수호될 수 있다. 각국의 국민들의 인권 수호의 의지, 이를 조직화하는 인권운동의 흐름, 여러 나라의 인권운동가의 연대의 물결, 이것들이 바로 국가의 안보로부터 인간안보로 바꾸어내는 가장 큰 동인(動因)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시지푸스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lt;발표 2&gt;

## 인권 ‘이념’의 발전과 실천

세실리아 히메네즈 Cecilia E. Jimenez  
(필리핀인권협의회 PAHRA)

오늘날은 나태하거나 무저항의 시기가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아니다. 인권활동가인 우리는 우리의 반드시 신념과 우리가 섬기는 민중을 위해서 그리고 이들 신념과 봉사가 이끄는대로 투신을 한다.

아태지역에서 만연되어 있는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는 도전 중의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인권 보장에 대한 무례한 모욕이다. 지난 몇 일 동안 우리는 여러 민족의 이해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이들 민족들을 무섭게 파괴시키는 이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다면적인 현상에 대해 토론하고 분석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권투쟁을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각자 또는 함께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야만 한다.

### 인권 ‘이념’과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투쟁

인권 활동을 하는 NGO들은 매일 인권 침해와 남용의 현실에 직면한다. 우리는 현장에서 그들의 고통, 분노,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감정, 변화를 위한 결단 등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인권 피해자들과 함께 일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각각의 사회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가 남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현실들을 폭로하고, 곤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이런

13)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Joseph J.Romm, *Defining National Security: The Nonmilitary Aspects*,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Press, New York, 1993 참조

14)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협의회,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 1994, p.59 소재 ‘방콕 선언’ 제26항 참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며, 대중을 조직하고, 교육하며 동원한다. 또 정부와 국제 기구에서 로비활동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활동 대상인 주변화된 희생자들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 운동을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연대를 맺게 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국제 연대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즉 국제연대의 힘은 다른 국가와 사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다른 희생자들과 맺는 우리의 연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국가 권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인권을 위한 투쟁이 단순히 인권 침해나 학대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되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의 발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침해와 학대는 억압과 불의라는 암의 정후이거나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오만한 권력과 제도의 기득권에 의해 밀려다니는 권력의 징후와 다를 바가 없다.

요컨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인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거나 피해 사례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활동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 뿌리와 원천을 다루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우리 인권운동은 단순히 사태에 반응(reactive)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향적인 대응(pro-active)해야만 한다. 우리 민간 인권운동단체의 효율성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부도덕한 근거를 거부하고 그 결과인 인권침해를 다루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인간존엄성, 인간안보 그리고 인권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신념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이데올로기와 투쟁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다른 신념의 집합을 '이데올로기' 혹은 철학, 도그마, 독트린 심지어는 현세적인 종교라고 까지 부르고 싶어 한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르던 간에,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용집력있고 종합적인 인권의 틀이어야 한다.

인권 이데올로기와 같은 어떤 틀이나 지향은 가치와 윤리의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일상의 삶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 행동 속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회에서 주변화되고 가장 취약한 영역과 그룹의 희생자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일국적·국제적 환경의 정치적·법적 기반 개발을 포함하는 이념적 구조물(construct)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두 수준은 불가피하게 상호 작용하고 서로를 정당화한다.

아태 지역에서, 우리는 이미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과 불가분성(indivisibility)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담은 인권을 '이념화'하는 과정에 올랐다. 이 주장은 1993년 방콕 민간 단체 선언에서 최초로 집단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재확인 되었다. 이런 주장은 지속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운동이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고 인간안보를 진척시키며 아태 지역 민족들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 반(反)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투쟁

1940년대에 개념화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는 이후 여러 가지 역사적 형태를 띠고 발전하였다. 브라질의 골드베리 (Goldberg) 장군이 한때 신봉했다가 나중에 포기한 것에서부터 미국이 보급한 저강도전쟁(Low Intensity Conflict)과 오늘날 아태지역에서 만연된 '개발독재 (development dictatorship)'에 까지 다양하다. 비록 그 형태는 변했을 지라도, 그 기본적인 개념들은 변하지 않았다. 즉 개인 혹은 인간안보에 대한 국가안보의 우월성, 국가를 민족과 동일시, 국가를 통치하는 군부와 보조적인 시민 에리트의 우선적 역할, 그리고 국가가 규정한 '적'에 대항하는 전쟁상태 또는 전쟁준비의 영속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것과 더불어, 전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잉태된 또 다른 체계가 발전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이다. 신념과 이상의 집합으로서 오늘날의 인권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발전해 왔다. 이데올로기로서 인권의 전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 기본 개념은 어느 시대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자국민의 인권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는 인권 '이데올로기'와 전적으로 상반된 것이다. 아태지역에서 인권 실현이 노골적으로 부정당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인권의 언어와 실제 내용(substance)이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와 흡수되고 있다. 국가안보 국가라는 절대명제에 끼워 맞추기 위하여 인권이 왜곡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먼저 아시아 정부들이 계속해서 문화 상대주의를 주장하거나 '아시아적 시각에서' 혹은 '아시아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인권을 해석하는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들은 인권을 분리할 수 있는 범주로 나누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적 권리에 중시하였고 집단적인 권리와 개인의 권리 사이의 갈등을 가정하였다.

아태지역 내에서 인권 침해를 문화적 상대주의와 인권의 위계성과 분리성에 대한 주장을 통해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국가 주권 개념이 인권 실행에 관한 국제적인 감시를 피하고, 인권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하나의 도피처로 사용된다. 국가 주권 개념은 아태지역의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언어와 실제 두 측면 모두에서 궤변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이론과 실제 두 차원의 인권 활동에 스며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권의 보편성 개념에 관한 우리의 작업에는 우리 아시아의 풍부한 철학과 문화를 반영한 인간의 존엄성 개념을 더 명료화하고 동시에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인권의 불가분성 개념에 관한 우리의 노력은 단순히 인권의 계층화와 분리가능성의 오류를 깨는 것만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자주 논의가 되는 발전권의 경우, 인권에서 추가적인 패러다임으로 더 깊이 연구, 성찰되어야 한다.

개인과 집단적 민중의 권리의 상호의존성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 뿐만이 아니라 집단, 부문 및 민족 차원의 희생자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이들 희생자들을 도와야 한다. 희생자는 특정 집단 또는 다른 정치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권 침해의 희생자라는 단순한 사실로 인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태지역의 독특한 경험에서 비롯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강조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우리 아태지역의 민간 인권 단체들은 연대활동을 증가시키고 국제사회와의 교류도 증진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국가적 지역적 경험의 장점을 통해서 국제적인 인권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가난한 남쪽 민간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여 지배적인 북쪽의 관점을 깨고 국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뜻을 차지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 개념을 발전시키고 명료화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인권활동에 대한 우리의 투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우리는 이론적 구성물들이 희생자의 삶과 공동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때에만 타당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점에서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를 영속시키는 국가와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아시아 정부들은 또한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와 결정을 연합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반면에, 민간 인권단체들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로부터 고통받는 공동체와 희생자의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의 기초이고, 힘이고 요청이다.

### 특정한 과제와 전략

우리의 과제와 전략의 목록이 매우 길다.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인권 침해와 학대의 영속화가 보다 교묘해지는 한, 그 목록은 더욱 길어질 것이며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아태 지역에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영속화가 이를 예증해 주고 있다. 우리 인권운동은 언제나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그 희생자들을 도와야 할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의 실행되는 과정이 보다 복잡하고 교묘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보다 효과적이 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대중에 기초한 인권운동을 만들기 위하여 조직화 작업에 우리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조직화 대상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희생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도 포함해야 한다. 이들 공동체의 대부분은 조직화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골 지역이 대부분이다.

조직화는 의식화와 인권 교육과 함께 진행된다. 의식화와 인권 교육은 공동체 의식의 기본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넘어 인권이 존중되고 증진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궤변을 드러내고, 그 구실로 인권을 왜곡하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이런 공동체적인 인권의식과 지향이 발전되어야

사람들은 국민들은 자신의 고통을 덜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된다.

조직화, 의식화 및 인권교육이라는 세가지 상호 관련된 과제는 공동체의 경험에 근거한 인권 '이데올로기'의 실천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향한 민중의 세력화를 위한 포괄적인 노력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의식화와 인권교육에 대한 노력이 정부와 야당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운동 활동가로서 우리의 임무는 이를 정치 기관과 우리의 인권 경험과 인권 개념의 전망을 공유하는 것이다. 인권이 훌륭한 통치(good governance)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할 교육적인 노력의 일부이다. 더욱이 미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의 인권 그룹들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비정부 기관들 뿐만 아니라 야당과 정치적 반대 집단들도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집권할 경우, 인권 학대와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국내적인 무장 갈등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이러한 교육이 실제로 매우 적절하고 심지어 시기적절한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기는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 수인들의 자유를 위한 매우 긴요한 캠페인을 전개할 때,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제도적인 구제를 주장해야만 한다. 먼저 이들 구제는 배상(compensation), 원상회복(restitution), 고발(prosecution)의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중적 캠페인과 입법·행정·사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이 수반될 것이다. 모든 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킬 입법적·제도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사법 행정은 효과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요컨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사회를 위한 정의는 민주적인 원리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존이 루어지는 곳에서 실현된다.

민간 인권단체들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인권 피해자와 공동체는 종종 국가 권력에 맞서서 싸울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이들이 강제로 주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변자로서의 인권운동 단체들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고 그들이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인권을 위해 조직화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통제 밖에서 사건들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의 책임도 더욱 무거워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함께 노력하며,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서울 국가보안법 국제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한 사례이다. 그렇지만 이번 대회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귀국해서 무엇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극대화시키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활동을 연대망(network)으로 하느냐, 아니면 연합(coalition)으로 하느냐와 같은 연대전략에 달려있다.

우리는 1993년에 아태지역 인권운동의 연대를 구축이라는 독특한 과정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이 분명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공동으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인권 현안의 하나이다. 따라서 나는 아태지역 인권운동 연대를 구축의 과정의 산물인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할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연대를 구축과정을 통해 우리는 당시 우리가 파악했던 다양한 인권 문제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가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아태지역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우리 스스로를 조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아태지역 수준에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특별한 조직적 과제와 전략은 현재의 소지역 및 지역 구성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적인 차원의 로비를 조정하고 전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네트워크(South East Asia Network, SEANET)의 형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인권운동 단체들은 1994년 처음 가동되었는데,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기간과 아세안을 상대로 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 캠페인과 로비를 전개하였다.

아시아의 국민인권기구와 지역인권기구는 아태지역 전체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들 메커니즘이나 기구들은 표면적으로는 '인권 보호나 증진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인권 담론을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에 흡수함으로써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이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감시활동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이들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 기구들은 '아시아적 시각'에 의해 왜곡된 인권 해석, 즉 아시아에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유지를 합리화하고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에서 가장 먼저 국민인권기구가 설립되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이어서 이 제도를 설립하였다. 우리는 이들 기관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유엔에서 아태지역에 지역인권기구를 만들려는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슈의 전개과정도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1993년에 우리가 시작했던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는 우리 지역의 인권 상황과 이들 기관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건과 기준을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들 조건 중의 하나는 이 메커니즘이 법적 실체가 바로 국제인권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국에 국민인권기구를 설립하고 그리고/또는 지역인권기구에 참여하는 아시아 정부들은 이러한 기구의 실질적 운영을 보장하는 근거로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해야 한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기구의 독립성과 민간 인권운동 단체들의 효과적인 접근성이 있다.

우리는 이들 메커니즘의 형성을 위한 추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않된다. 유엔 및 여러 아태지역의 정부간 지역기구는 이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1990년 마닐라부터 시작한 인권 워크샵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1994년에는 이곳 서울에서 워크샵이 열렸고 한국 정부는 서울 워크샵에서 앞으로 해마다 워크샵의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 워크샵 올해(95년) 12월 네팔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주에 유엔 인권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워크샵이 내년 초로 연기되었다고 통보받았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최근 입장을 점검, 확인하고 적절한 기

준을 주장할 시간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우리는 이 기구가 진정으로 '인권의 보호나 증진'을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한 실제적인 문제 이외에도, 우리는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들의 보호에 대해 아태지역 차원에서 조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정 국가에서의 인권옹호자, 활동가 및 민간단체(NGO)의 활동의 정도는 통상 그 국가의 인권 상황의 상황에 대한 유용한 지표이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인권옹호자와 인권민간운동단체는 소위 '적'의 범주에 해당된다. 인권 활동에 대한 일국적 차원의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권옹호자(defender), 특별하게는 인권활동가(activist)의 보호는 국경을 넘어선 연대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아태지역 내에서 좀더 긴장감을 가지고 직면해야 하며 집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긴급호소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와 지역기구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인권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인권운동이 시작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우리는 인권운동에서 얻은 개념, 기술을 확산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 인권교육과 훈련과 연계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경험이 풍부한 필리핀 인권활동가들은 캄보디아 인권활동가로부터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기술을 나눈다.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훈련과정과 교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는, 비록 필요불가결한 것이지만,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얹혀있는 상호관련된 권력의 이해관계의 일부이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은 유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유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많은 정부, 국제 기관 및 초국적 기업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유엔에서 인권 정치화(politicalization)되는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적절한 인권관심사가 되도록 유엔에 집단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법규의 결과물인 인권침해를 계속 비난하는 한편, 국가안보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인권침해의 원천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유엔 인권기구에서 나라별과 주제별 절차를 활용할 때, 우리는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하의 인권침해에 대해 자료를 만드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유발시키는 법률을 지적하고 이러한 인권침해가 현존하는 국제인권규범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유엔 인권조약 기구에 제출하는 우리의 민간단체 반박보고서에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법규의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의 인권운동 단체들은 유엔 인권이 사회에 제출한 반박보고서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내가 앞에서 언급한 점들을 다시 짧게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인권침해 그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침해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 인권기구들이 상황에 대한 분석을 더 심도있게 하고 관련 정부들에게 더 나은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현재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적절한지 또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별도의 국제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는 부족한 유엔의 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강화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유엔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법규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유엔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생각이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축소된다. 동시에 우리는 민간 인권단체 특히 일국 차원(national) 민간단체의 유엔 접근을 강화해야만 한다.

현재의 주제별 절차는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그 법률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 시기에 의사표현의 자유, 비상 사태,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실종, 자의적 구금, 고문, 약식 혹은 자의적 처형, 종교적 불관용, 국내 이주민 및 사법부의 독립 등에 관한 주제별 절차를 이미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가들을 직접적인 국제적 인권감시가 매우 필요한 나라에 대한 나라별 절차를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게다가 유엔 인권위원회와 산하의 인권소위원회 그리고 인권에 관한 유엔 고등판무관과 같은 제도가 제공하는 포럼들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그 법규 그리고 이에 따른 인권 침해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유엔의 장과 기구를 통하여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그 법규와 관련된 여타의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집단적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확인하였는데, 다시 열거하자면, 인권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인권 옹호자, 활동가, 인권운동단체의 보호이다. 우리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폭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타의 국제 및 국내 민간 단체들과 협력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인권운동 단체로서 우리의 임무는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정부를 지원하는 다른 나라의 정부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포함하는 국제기구와 초국적 기업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지원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일국적 및 지역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 실행하고 그런 억압적인 정부에 대한 이들의 묵인을 중지하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국제인권 활동은 국제연대 운동, 남측의 민간 단체 및 국제 인권운동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에 그들의 관심을 모으도록 노력하고 우리의 지역적 주도(initiative)에 그들의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앞에서 경고한대로, 할 일은 많고 분명히 더 많아 질 것이다. 우리는 하루 아침에 변화시키거나 이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과제와 그것을 효과적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조직화 함으로써 이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위해서 스스로를 조직한다는 것은 더 나은 의사소통체제, 더 강력한 조정 구조 그리고 적절하고 합당하게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국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편협한 경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아직도 인권운동의 구조 뿐만 아니라 태도의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96년 12월 열릴 예정인 아태지역 인권운동단체 대회(Asia-Pacific NGO Congress)를 조직하기 위한 지속적 대화와 노력이 이 과제를 실현하는데 희망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특정 문제에 대한 지역적 노력이 이러한 우리의 시도의 실체를 이룬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와 민중의 인권에 대한 옹호 우리의 존재 근거를 강화시켜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잊어서는 않된다. 우리는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증진되는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일한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위임받은 사명의 기초이고, 우리의 힘이며,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주제 5 :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lt;발표 3&gt;

##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 - 유엔 국가보안법 특별보고관 임명운동을 제안하며

제임스 실크 James J. Silk  
(로버트케네디기념인권센터 소장)

전세계에서 모인 85개 이상의 비정부단체(NGO)들은 93년 6월 열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한국 민간인권단체들의 주도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가보안법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문에서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들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sup>1)</sup>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로버트케네디 기념 인권센터는 이 문제를 유엔인권위와 산하의 인권소위에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제여서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조차 범죄행위로 몰아 제한하는데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이용된 사실을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사례들은 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성격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베트남에서는, 95년도 로버트케네디인권상 수상자인 Nguyen Dan Que 박사와 Doan Viet Hoat 교수가 '인민정부의 전복을 노린 활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장기 복역 중입니다. 또한 Que 박사는 자신이 도왔던 정치개혁운동에 참여할 사람들을 선별하고 국제엠네스티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반정부 선전활동을 수행했다는 이유

로 기소당했다.

- 중국정부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적으로 실행에 옮긴데 대해 '반혁명적 범죄행위(counterrevolutionary crimes)'라며 일반인들을 구금, 재판하고 실형을 선고해왔다. 저명한 인권 및 민주주의옹호자이며 94년 로버트케네디인권상 공동수상자인 Wei Jingsheng과 Ren Wanding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구금 중에 있는데 Ren Wanding은 91년에 '반혁명적 선전 선동죄 (counterrevolutionary propaganda and incitement)'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Wei Jingsheng은 기소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94년 이후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로 구금되었으며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 케냐에서는 '소요', '선동', '불법집회 개최'에 대한 법률을 이용하여 국회의원과 전국적으로 알려진 반정부인사들을 포함한 언론인, 야당정치인들을 구금하고 있다.
-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가자 Gaza 지구와 서안 West Bank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가기관 (Palestine National Authority)이 행정명령 (executive decree)을 통하여 국가안보 재판소를 설립했는데 적정한 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포함하여 피구금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려왔다. 재판은 야간에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5시간만에 종결되었고 피고인들은 법률 자문이나 항소권도 박탈당한 채 보장된 결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근거로 한 '불법조직 가입', 또는 '폭력선동' 등의 죄목에 따라 6개월에서 종신형 까지의 형을 선고받았다.

각국의 정부는 자의적이고 무한정한 구금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를 법의 권위를 내세워 숨겨왔는데, 이는 국제인권문서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B규약)이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근거로 하여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 조항들에는 그 적용 범위, 국가안보 관련사항들에 대한 내용 및 적법한 기준, 그리고 그러한 제한을 적용하는데 요구되는 조건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1984년 전문가 모임이 채택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 대한 국제규약(B규약)의 제한 및 침해 조항(Limitation and Derogation Provisions)에 관한 시라쿠사(Siracusa)원칙들, 그리고 지난 95년 9월 만들어진 국가안보,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들은 국가보안법 하에서의 인권침해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원칙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국가의 인권존중 및 보호의무 예외조항을 해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를 구성하는 조건을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원칙들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정부가 국가안보를 구실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들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구실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중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메카니즘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권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

1)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 1993년 6월 17일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국가안보와 민중 안보 National Security vs. People's Security" 심포지엄에서 채택, 서명됨.

보고관제도를 설립한다면 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하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기적인 진상조사제도는 그 자체로 국가가 국가안보를 수호할 목적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게 하는 귀중한 수단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특별보고관제도는 국가보안법이 인권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이를 인권위원회에 권고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의 주요 인권기구의 권위하에서 이러한 과정은, 시라쿠사와 요하네스버그원칙에도 담겨져 있으며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여러 민간 인권단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원칙들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인권과 국가안보에 대한 특별보고관제도는 인권과 비상사태에 관한 특별보고관제도를 모델로 삼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적·정치적권리에 대한 국제규약(B규약) 제4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하에서의 침해 (Derogation in a public emergency)’와 관련하여, 시라쿠사 원칙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산하 인권소위로 하여금 “규약의 비준 여부에 상관 없이 공공 비상사태를 선포, 유지, 종결한 국가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여 이 보고서에 각 비상사태에 관련한 정보를 수록할 것을 요청하였다.<sup>2)</sup> 1985년에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유엔인권위 산하 인권소위원회에게 비상사태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sup>3)</sup> 특별보고관이 위임받은 권한(mandate)에는 비상사태를 선포 또는 종결한 국가명단 준비, 비상사태 도입을 통제하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대한 각국의 준수여부 조사, 비상사태 시 취한 정부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포위 (siege) 또는 비상사태 상황에서의 인권존중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 조치”<sup>4)</sup>에 대한 권고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상사태에 대한 특별보고관인 레안드로 데스포이 (Leandro Despouy) 씨가 수행하는 업무는 비상사태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1994년 보고서에서 Despouy씨는 “비상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절차를 밟지 않고, 일 반법 제정을 통해 비상사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인하는 위험스런 탈법(divergence)<sup>5)</sup>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 “형법법 또는 정상적 상황 하에서도 적용 가능한 절차의 형태를 취하게 될 때 특히 심각한 … 법의 남용”<sup>6)</sup>이라고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사태는 이러한 법들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비상사태 기간 중에만 유예될 수 있는 권리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제한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일반법이 예외

2) 시라쿠사원칙, E/CN.4/1985/4, 75 항목

3)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985/37

4) 비상사태에 대한 특별보고관 제7차 연례보고서(수정판). E/CN.4/Sub.2/1994/23 항목 5

5) 앞서 언급한 보고서 38 항목

6) 앞서 언급한 보고서 39 항목

적인 상황에서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까지도 종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up>7)</sup>

특별보고관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 외국인 혐오(xenophobia)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것을 요청하였다.<sup>8)</sup>

특별보고관의 권고안은 더할 바 없이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 문제를 각 주제별 특별보고관 및 실무분과가 조사하는 것도 이 문제를 파헤치는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보안법하의 인권문제가 워낙 크고 고질적이고 널리 만연돼있는 까닭에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특별보고관제도를 수립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법제도를 연구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실무그룹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확실히 보장되는 권리의 실행을 유죄판결의 법적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들 권리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활동을 ‘반혁명적 선전·선동’, ‘사회질서혼란’, ‘교통질서혼란’ 등으로 여기는 자치법들은 모두가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시민적·정치적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위배되므로 폐기할 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sup>9)</sup>

인권이사회는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근거로 한 인권 제약에 관한 법제도를 발전시켜왔지만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견해는, 규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이사회의 일반적인 언급 뿐만 아니라, ‘선택의정서’의 통보절차에 따라 제출되는 사례와 국가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토대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로 인권침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및 분석이 어렵다. 이제까지 이사회의 관찰, 결정 또는 논평 속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합법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그 어떤 기준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하의 국가행동을 비상사태 특별보고관의 정기적 조사 권한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고려할 때, 비상사태 특별보고관의 관찰과 권고안은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청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인권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하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사태 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mandate)이 제공하는 유용한 본보기를 참조하여 말한다면 인권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7) 앞서 언급한 보고서 40절

8) 앞서 언급한 보고서 41절

9)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채택한 결의문. E/CN.4/1995/31/Add. 1, 결정번호 53/1993, 8절

- 국가보안, 공공질서 혹은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근거로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제한하는 국가 및 그 국가의 법률에 대한 목록을 연례적으로 준비할 것.
- 각국의 국가보안법 및 그 법의 시행이, 시라쿠사원칙과 요하네스버그원칙에 담겨져 있는 해석상의 원칙에 따라 국제인권조항을 충실히 준수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보고.
- 국가보안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보고.
- 국가안보를 보호한다는 주장하는 법의 권위하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를 정당하게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규명을 포함하여, 인권위원회에 필요한 조처를 권고할 것.
- 양도될 수 없고(inalienable), 침해될 수 없는(non-derogable) 권리의 지속적으로 규명하는 작업과정에 기여할 것.

인권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정보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국가보안법하의 인권침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꾸준히, 분석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 특별보고관 제도는 유엔의 가장 중요한 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의 정기적인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권한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보고관제도를 수립하고자하는 노력에 여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주제 • 5 : 질의응답 및 토론

### 로버트 리드

이 토론의 기저를 이해하는데 국가를 하나의 도구로 바라본다면, 국가는 이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행위자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조직은 끈임없는 비판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기업은 초국경적인 성격 때문에 더 막강한 힘을 보유하게 되었고, 후기 산업화 시기에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데에서 초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특성은 다른 토론에서도 드러났지만 인도주의적인 행위나 UN과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것이고, 이러한 국제적 기관의 평화유지 활동의 경계선은 어디인가를 소말리아, 전 유고슬라비아, 아이티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주권과 국가라는 소속의 한계가 약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륙에 걸친 민간단체의 연대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요. 민족자결권 측면에서 구 소련체제의 붕괴와 전 유고슬라비아 사회의 붕괴를 보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반갑지 않은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토론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상황을 이 자리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보고관 같은 사람도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아직도 얼마나 끔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네덜란드 인권단체들과 같은 노력선상에서 그들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초강대국들이 그런 제3세계 국가들에 있는 권력자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점진적인 개선방향이지만 이것은 현실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입니다. 정부간 조직인 UNDP(UN개발계획) 안에 인간발전 지표가 있는데, 그 인간 발전 지표안에 국가안보관련 상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UNDP 보고서가 정부차원이나 다자간 군기관의 많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UNICEF의 보고서에도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의 상황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어떻게 야기되고, 영향받는 것인지를 알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해내고 정보들을 더 많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고서에 집어 넣는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검토해야 할 다른 주제는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건의 운동을 하도록 헌법소송을 낸다든가 법률적인 소송을 하여야 하고, 그 여파로 공식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여론을 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제기하고 싶은 이슈는 세계은행이나 IMF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심의과정에 협의자격을 갖고 있는 단체를 통해서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파리에서 94년에 협의모임이 있었고, 96년에 도쿄에서도 IMF의 모임이 있는데 그러한 협의회의에 인권단체 일부가 참여하여 관, 정부, 기업단체가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외부의 압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제인권규약의 비준 그 자체는 인권보장의 수표는 아닙니다. 국제규약의 효력이 국내법적으로 발효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인권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국내화에 대한 반대논리, 회피논리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지역인권보장회의 우리가 상대하는 아시아의 정부들에 의해 굉장히 마키아벨리적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고문방지협약에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아직 중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신중하게, 아주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동훈

저는 국가안보법을 정부안보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홍규 교수가 말씀했지만 국가안보를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도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국내 인권문제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곳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서 특히 냉전후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는 현상을 무시하고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내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내정간섭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국가안보문제를 생각할 때 국내 민주주의라든가 법의 지배, 이것이 확립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자의 지배이기에 소수자의 의견,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민족적 소수집단, 종교적 소수집단, 사회적으로 소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국가안보의 문제를 아시아나 발전도상국에 대해서만 생각해봤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는 일본이나 미국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한국 사람이 6, 70만명이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치마 저고리를 입고 민족의 이름을 쓰는 등의 민족적 표현을 나타날 때 일본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차별을 받습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흑인들에 대해

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일본사회에서는 파괴활동방지법이 있어 파괴활동 가능성이 있는 단체를 불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북조선을 지지하는 조총련이 대표적 예입니다.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소수자를 위협하는 다수자도 인권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안보를 인권이라는 면에서 볼 때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 사회적 인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분탄 베라웅세

토론시간에 각국의 상황을 잘 들었는데 박원순 변호사께서는 세실리아 히메네즈처럼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상기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죽은 공룡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60, 70년대 상황을 보면 지금 까지 많은 나라들이 독재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싱가폴의 이광요(李光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도 가장 오래된 군사독재 중의 하나죠. 태국에서도 탈냉전 시기에 독재정권을 겪었습니다. 이런 정권은 강대국에 의해 지지를 받았고, 그 강대국의 최전방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공산국가를 막기 위한 전진기지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막기 위한 기지로 사용되었고, 태국은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미국의 전진기지, 남아시아의 파키스탄, 소련의 공산국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사용된 전진기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케이스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문제인데 물론 박원순 변호사님 발표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식민지의 정당성에서 나올 수 있고, 제국주의 통치의 결과요, 반공주의 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가안보의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국가를 넘어선 지역불록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향 중의 하나이고, 특히 남아시아에서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의 목표는 단순히 한 국가의 안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적인 사안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로버트씨가 APEC에 관해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지역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억압적인 각국의 지도자들은 서로 보다 더 많은 협력을 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실리아가 말씀하셨듯이 국가안보 이념에 관한 것인데, 물론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국가안보에 대해 얘기할 때 국가안보란 정부안보에 불과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민족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부가 이러한 국가 또는 민족적인 것에 대해 더 이상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국가안보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억압적인 하나의 통치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이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

가안보이념이 미치는 그러한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적 역량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가안보이념의 문화적 여파,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국가이념은 교육제도와 국민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큰 여파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 문제인데 많은 나라에서는 군사의 문제는 국가안보 이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사화의 희생자들은 물론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전체문제의 일부분이고 물론 우리가 상대해야 하지만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는 국가이념, 국가안보 이념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운동에 그쳐서는 안되고 더 멀리 나가서 이러한 종류의 이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한 것에 대한 일차적 결론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이념은 인간존엄성과 인간존재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은 억압적 체제의 현상태를 유지하고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우리는 국가안보이념 특히 주로 경제개발전략에 있어서 국가안보이념의 해악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네번째, 국가보안법 또는 다른 중요한 사안과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국가적인 사안에 어떻게 국가안보이념이 어떻게 스며들어가 있는가를 잘 폭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이념에 반대하는 더 광범위한 민중운동을 끌어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인간안보의 이슈는 다음단계 우리 운동에 아주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전에 대해 아주 많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민중대 민중의 연대입니다. 이것이 민족국가의 구 개념을 대체하는 그러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국가란 영역의 경계로 민중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의 전략을 얘기할 때 세실리아, 박원순 변호사가 제안한 내용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조직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집단적으로 어떻게 함께 노력할 것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 지역적 협력에 관련해 기존의 어떤 운동단체도 이것을 위계질서형으로 묶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형으로 인권운동단체들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는 소지역별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소지역주의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지역 차원에서의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지역주의가 갖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존재의 문제이지, 특정 부문, 특정 국가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3·40년 동안 우리 나라, 우리 민중, 우리 개인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려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울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집단적인 노력입니다.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이념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그러한 노력. 이러한 제도 억압, 법에 대해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 제임스 실크

제가 아시아에서 인권과 관련된 전략을 제안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몇가지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언급하고 싶은 한가지 전략은 제가 제출한 글에도 나와 있는데 국제사회의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기준을 세우고 이러한 기준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기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보고하고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실제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가지 인권침해 사항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기구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시아적 특성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종류든 국가보안체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상황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몇가지 전략은 두 분의 발표에서 인권과 국가보안법에 관한 특별 보고관제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세실리아씨의 발표에 따르면 제1세계나 제3세계 국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엔의 특별보고관 제도나 또한 이와 비슷한 특수한 제도를 유엔 안에 세우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대한 워킹 그룹은 그러한 인권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국가보안법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공개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공개되지 않은 인권침해 상황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국제협력, 국제연대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환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고관제도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유엔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특별보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과 특별보고관이 어떤 기조로 일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보고관 제도는 지속적으로 인권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RCCPR을 인준한 국가들이 이러한 기준을 잘 따르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제도들이 갖는 인권에 대한 영향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엔의 가장 중요하 인권기구를 통해서 인권의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어제 예기했던 요하네스버그원칙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중요한 인권원칙을 유엔에 제기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보고관은 비상사태나 국가보안법에 관한 연구를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4년 보고서에 의하면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일반형법에 따라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조치를 강압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침해문제에 관해서 데스포이씨가 그의 보고서에 언급하고 인용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제별 특별보고관에서 유엔에서 활

동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의 제안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것이고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들이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그들에 제안속에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안을 낸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절차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보안법상의 인권침해에 관한 특별보고관제는 비상사태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제도의 본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드씨가 말씀했지만 유엔인권위원회 안에서 각국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것이 기존 국제법에 일치하는지 국제인권규약에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침해받을 수 없고 불가분한 그러한 인권을 계속 보호해야 된다는 국제규범을 확인할 수 있고 특별보고관은 NGO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고 분석적으로 보고서에 포함을 시키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인권위원회가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면 그 인권상황에 대한 주목과 그 인권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실리아씨가 말씀하신 것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세실리아씨가 국제적인 기관 안에서 국가보안 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인권침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처럼 미국에 기반을 둔 단체가 특별히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은 단체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연관된 활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부에서 발생하는 국가보안법상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에 있는 NGO와 서방의 국제적인 민간단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전략을 내어서 서방에 기관을 두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서방정부에 가할 수 있는 압력의 방법 문제제기 할 것 정책제안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우리 파트너 단체들은 미국정부의 정책과 관계된 서방정부와 관계된 많은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케냐에서 제3세계 지원단체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 단체들이 모여서 케냐 정부의 인권정책에 강력히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케냐 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유엔의 효율성에 대해 인권기구의 효율성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인권기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한 방법이 특별보고관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감독기관을 활용하는 것이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의 이러한 역할은 굉장히 작은 역할이지만 결국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실리아는 인권운동가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인권운동가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몇몇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 지

지하기도 또는 반대하기도 해서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만 여기에 모인 우리 단체들이 그러한 국제규범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고 성사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몇년 동안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성사될 뻔 하다가 못했다. 미국정부의 주도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지만, 저는 미국정부가 제3세계 NGO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가 관철이 잘 안되는 것은 이러한 결의안이 NGO와 별로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모든 정부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안드로 데스포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아시아 지역에서 NGO의 할 일이고 두번째는 유엔에서의 정부간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첫번째 제안은 민간단체들이 결코 비상사태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상사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면밀하게 조사하고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사태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가해지는 실제 영향은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아시아에서의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상의 인권침해 그러나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버트 리드씨에 대해서 제기된 것은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한 비상조치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전략이 제안됐는데 아시아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외의 지역과도 정보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제네바나 파리 런던 중요한 국제결정이 내려지는 그러한 곳과의 정보교환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간 기구 안에서의 국제적 활동에 관해서 과거 우리는 강제실종과 같은 인권침해가 어떤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국가안보체제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국제적 차원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비상사태에서 인권상황은 강제실종 당하던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과 같은 맥락인데 비록 국가보안법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두자는 제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안은 자동적으로 다른 국제기구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더 심사숙고하게 만드는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보고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제안하고 또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활동은 정부들로 하여금 또는 인권소위로 하여금 비상사태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추가 임무를 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심을 두고 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게 추가 위임을 해서 이러한 국가보안법 상의 인권침해 상황이 자의적 구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러한 제안이 반드시 채택되리라는 목표라기 보다는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다른 기존의 인권기구에서 활동영역을 확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고 앞의 두 발표자가 제기한 생각에 동의를 표하고 싶고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만드는 것 보다 기존의 제도에 더 확대된 권한,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번째로 국가보안법이 인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문제는 추가적인 분석과 여론의 관심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회의에 참석한 덕분에 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그러한 희생자들의 가족과도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인권운동가들 또 법조인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관한 굉장히 반대의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친해서 온 사람들이 공동의 비전에 동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보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비상사태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서 저는 사회질서의 당담자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대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느낌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법률이 곧 개정되어야 된다는 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법이 실제로 과거의 것이고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곧 이러한 법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이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희망과 확신을 갖고 이 나라를 떠날 것이며 곧 바뀔 것이라는 확신 - 국가보안법이 박물관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안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 을 갖고 이 나라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 로버트 리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방콕과 비엔나를 거쳐서 이러한 행사를 계속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민가협의 대회에 참석하면서 지역의 NGO와 그리고 세계적 NGO 그리고 북쪽과 남쪽간의 NGO간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는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것은 APEC에 관련된 개발과 인권의 문제, 두번째 것은 경제자유화 기간 동안 지역간의 협력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자유화에 따라서 법치주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러한 법치주의를 남용하는 사회가 많았습니다. 세번째로 APEC은 굉장히 언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호주같은 정부들과 같이 APEC을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APEC에서는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등 다른 NGO들도 참여하고 있고 그러한 단체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 모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내년에 또는 가까운 미래에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하네스버그 원칙에 대한 지지하고 서명을 했고, 또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각자의 나라에 갖고 들어가서 그 나라의 단체의 지지서명을 더 많이 받는 일이 있으며, 그렇게 서명을 많이 받을수록 요하네스 원칙에 더 많은 비중을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아태지역 인권단체 촉진팀에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의 여러가지 단체들이 그런 제안들을 모아서 이 회의의 참석자들에게 모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사바라시아 라시아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특히 이 지역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초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인권단체협의회에서 이런 중요한 회의를 조직해서 열심히 하신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좀더 확실한 지속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는 어떤 자의적 구금이 발생할 때 우리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다른 지역과 같이 캠페인을 같이 하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같이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역적 단체가 물론 제가 이것이 인권협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어떤 단체들이 이런 지역적인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킨히데 무자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인데, 첫째는 모든 차별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국제운동단체로서 저희는 차별받는 소수집단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제가 유엔대학에서 1970년대 말에 일을 했을 때 아르헨티나에 방문을 했을 때 아르헨티나와 계약을 하나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아르헨티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많이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UNDP가 이제 NGO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NGO 또는 유엔에 협의자격이 없는 NGO들을 UNDP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데스포이씨에 대한 질문인데 전시에는 국제법에 중립국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립국가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법이 있는데 비상사태가 내려진 국가에서 제3자 다른 나라나 다른 국제기관이 특정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독재적인 정권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비상사태 규정이라는 것은 전시상태와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면 제3자의 중립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번째로는 유엔에 새로운 제도 중에 인권고등판무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외교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보고관의 법적인 역할과 결합된다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인권고등판무관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 바질 페르난도

저는 세 가지를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인권현장을 제정하는 것과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아시아 인권단체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여러 단체들에게 회람되어 왔습니다. 또 한 한국어로도 되어 있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장의 제목은 우리의 공동 인간성이란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안보가 침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래전 생님께서 언급하실 그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만든 현장에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권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미로 토론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의미를 좀더 긍정적 의미로 언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대전 동안에 인류는 인권에 대해 어떤 규정을 갖고 국제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현장을 통해 기본적 전략으로서 아시아의 NGO들은 가장 인권침해가 많은 지역으로 선택해서 우리 투쟁의 초점 지역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르코스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았고 오늘날 버마와 캄보디아, 동티모르가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약에 초점을 맞춰 인권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좀더 적극적으로 인권운동, 인권운동사회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노력

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인권 운동단체가 있건 없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 르네 사르미엔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가지 인데 앞서 나온 제안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첫번째로 인권변호사들이 더욱 더 격려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변호사들과 여러가지 지혜와 정보를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필리핀에서는 목재업에 대한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환경파괴 문제로 그 다음에 교육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 학생들의 문제를 제기 했는데 역시 대법원이 이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국제인권규약을 들어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번째 제안은 제 옆에 계신 분들이 가톨릭 수녀님들과 불교의 스님들인데, 종교인들이 보다 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나선다면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인권운동가들이, 또 인권운동변호사들이 더 많이 여러가지 공직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권운동의 부당성을 더욱 더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세실리아 히메네즈

저는 지역인권보호제도에 관해서 한 가지 알리고 싶은 것은 지역인권보호제도에 관한 워크샵이 네팔의 유엔사무소에서 96년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NGO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인권보호제도에 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우리 의견을 여기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탄이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아시아의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인데 이 지역에서의 우리의 경험을 보면 민간운동으로서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세안 정부들의 정보기관 책임자들이 점점 더 자주 만나서 첨보활동 차원의 협력활동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목해야 할 지역적인 발전과정이고 다른 아시아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동남아시아의 인권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에 대해 굉장히 많이 얘

기 했는데 그리고 저는 유엔에 참여한 NGO에서 여러 해 동안 활동한 사람으로써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필리핀 문제를 제기하려는 활동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최대화하기 위해 유엔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환상을 갖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유엔에 관해서 여러 해 동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재원이 점차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실무자들이 서류에 쓸 종이를 자기 돈으로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이 처한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엔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특별인권제도는 굉장히 가치롭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특별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보고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제NGO나 다른 민간단체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런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교환 정보제공 그 밖의 다른 어떤 실무적인 협력에 있어서 인권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특별보고관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지하고 싶은 것은 시바의 제안인데 지역의 통합적인 대 유엔활동인데 이러한 것을 위해 지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만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유엔을 상대로 앞으로의 우리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실수 유엔기구를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렇다고 덜 주요한 것은 아니고 유엔에 관련된 주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일국의 NGO들이 유엔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문제에 대해 저는 지난 몇년 동안 개인적으로 유엔에서의 로비활동을 많이 했는데, 특히 각국의 NGO들에 대해서 협의자격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활동을 했는데 당분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국 차원의 NGO로서 서로 함께 일을 하면서 유엔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그런 직접적인 활동방법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천정배(사회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제토론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들의 전략과 구체적 과제에 관한 수많은 제안들을 듣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토론을 마치면서 회의를 연장해서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충분한 의견과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이 없는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주제토론에서 우리들 간의 연대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싸우는 모든 국민의 의지를 북돋아서 국민의 힘에 의거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다는 저희들의 평범한 결론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자, 토론자, 동시통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참가자 소개 및 연락처

\* 한국 참가자는 발표자, 사회자, 발언자만을 수록하였음.

### 〈국내 및 재일동포 참가자〉

#### 고영구

인권변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HRENET) 대표 역임

주소 : 민변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 곽진웅

오사카 재일 한국인 인권그룹(Korean Rights Group in Japan) 회원  
주소 : 3-6-24 Tsuruhashi Ikuno-ku, Osaka, Japan  
전화 (81-06) 715-2651 팩스 (81-6) 715-2652

#### 김경남

개신교 목사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국장  
주소 : 136-032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전화 : 764-0203 팩스 : 744-6189

## 김 동 훈

류코쿠대학 국제인권법 교수로 재직중이며 일본에 소재한 인종차별 반대 국제운동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Discrimination and Racism, IMADR)의 실행위원이자 오사카 아태 인권정보센터(HURIGHTS-Osaka) 이사로 활동 중.

주소 : 150-7 Matsumidai, Ikoma-shi, Nara-ken, Japan  
전화 : (81) 7437-4105 팩스 : (81) 7437-4105

## 민 향 숙

재일 한국 양심수 동우회 회원. 경북 경산군 출생. 숙명여대에 입학하였으나 1975년 이철씨와 함께 구속, 수감되어 1979년 만기출소함. 현재 일본에 거주.

주소 :  
전화 : (81-6) 741-2791

## 박 원 순

인권변호사로 현재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 1991년 런던경제대학(LSE)에서 국제법 과정 수료하였고,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역임. 저서로 『국가보안법 연구』 등이 있음.

주소 : 참여연대,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 박 홍 규

영남대 법학과 교수. 오사카 시립대학, 하버드 법대, 노팅엄 법대, 프랑크푸르트 법대에서 공부했고 현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저서에는 『노동법』(1995), 『사랑의 민주화』(1994), 『법과 사회』(1994), 『비교법』(1993), 『한국과 ILO』(1991) 등이 있다.

주소 : 706-014 대구 수성구 범어 4동 일지맨션 103-1205  
전화 : (053) 810-2620 팩스 : (053) 814-3199

## 서 승

교토 Ritsmeikan University 강사. 1963년 한국에 유학, 이듬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 입학. 1971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되어 1988년까지 19년동안 수형생활을 했다. 저서로는 『옥중 19년』(1994), 『조직화된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하여』(1992), 『민중이 진짜 승리자』(1991) 등이 있다.

주소 : Komatsu House 105, 22-1 Hanazono-cho, Imakura, Sakyoku, Kyoto 606, Japan  
전화/팩스 : (81-75) 721-8311

## 오 재 식

크리스챤 아카데미 부설 한국사회교육원 원장이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70년대에는 아시아교회협의회(CCA)에서, 80년대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정의 평화 장조국장(Unit III)으로 활동.

주소 : 한국사회교육원 110-510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 크리스챤 아카데미  
전화 : 744-3964 팩스 : 766-7329

## 윤 종 현

민변 소속 인권변호사로 서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실행위원장  
주소 : 민변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 이 미 경

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 조 용 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역서로 『벌거벗은 나라들』(1996)

주소 : 민변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 최 옥 순

천주교 분도회 소속 수녀로 현 천주교인권위원회 집행위원  
주소 : 110-022 서울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3층  
전화 : 777-0643 팩스 : 775-6267

## 천 정 배

인권변호사로 민변 사무국장과 역임, 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 함승규

오사카 재일 한국인 인권그룹 (Korean Rights Group in Japan) 회원  
 주소 : 3-6-24 Tsuruhashi Ikuno-ku, Osaka, Japan  
 전화 : (81-06) 715-2651 팩스 : (81-6) 715-2652

〈외국 참가자〉

### Abdul Hakim Garuda Nusantara 압둘 하킴 누산타라

인권정책연구와 옹호센터(I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의 소장  
 주소 : Jalan. Kampung Melayu Besar, No 44, Jakarta 12840, INDONESIA  
 전화 : (62-21)-829-6905 팩스 : (62-21)-835-3690 E-mail : Elsam@nusa.or.id

### Akihisa Matsuno 아키히사 마츠노

동티모르해방을 위한 일본연대회의 (Free East Timor Japan Coalition)의 소속단체인  
 오사카 동티모르 협회(Osaka East Timor Association) 사무국장. 아태정보센터  
 (Pacific-Asia Resource Center)의 회원.  
 주소 : 4-21-22 Higashi-awaji, Higashi-yodogawa-ku, Osaka 533 JAPAN  
 전화 : (81-6)-321-5579 팩스 : (81-6)-370-8314 Email : amatsuno@igc.apc.org

### Akio Kawamura 아키오 가와무라

오사카 아태인권정보센터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HURIGHTS)의 연구원  
 주소 : HURIGHTS, 15th Floor 2-1-1500, Benten 1-chome, Minato-ku, Osaka 552,  
 Japan  
 전화 : (81-6) 577-3578 팩스 : 577-3583 E-mail : Kawamura@po.ijnet.or.jp

### Aurora A. Parong 아로라 파롱

필리핀인권운동연합(PAHRA)의 지도위원. 인권피해자 구제운동을 펼치는 개인, 기

구와 센터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인 인권과 건강을 위한 국제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Health and Human Rights, ISHHR)의 실행위원회위원. 저서로는 『고문과 그결과, 현재 치료 방법』(Torture and its Consequences, Current Treatment Approaches edited by Metin Basoglu,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Babloo S. Loitongbam 바블로 로이통밤

70년생 인도의 학생운동가 출신. 현재 남부아시아인권자료정보센터(SAHRDC) 연구원  
 주소 : SAHRDC, 6/105, Kaushalya Park, Hauz Khas, New Delhi 110 016, India  
 전화 : (91-11) 686-5736, 685-9622 팩스 : 686-5736 E-mail : sadc@unv.ernet.in

### Basil Fernando 바질 페르난도

스리랑카 출신 변호사로 현재 홍콩에 있는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소장이며 유엔인권센터 캄보디아 사무소 소장 역임.  
 주소 : AHRC, Flat E, 3rd Floor, Kadak B/d, 171 Sai Yee Street, Mongkok, Kowloon, Hong Kong  
 전화 : (85-2) 2714-5123 팩스 : 2761-3326 E-mail : Ahrchhk@hk.super.net

### Boonthan T. Verawongse 분탄 베라옹세

발전에 관한 아시아문화 포럼(Asian Cultural Forum On Development)의 인권과 평화프로그램 담당자. 아태지역 인권촉진팀(Asia Pacific Human Rights NGO's Facilitating Team) 간사.  
 주소 : ACPD, P.O.Box 26, Bungthonglang, Bangkok 10242, THAILAND  
 전화 : (66-2) 377-9357 팩스 : 374-0464 Email : boonthan@mozart.inet.co.th

### Cecilia E. Jimmenez 세실리아 히메네즈

변호사. 필리핀인권운동연합(PAHRA)의 국제연대 사무부총장.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합(Internati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의 부회장.  
 주소 : Ul. Gen. Kartsov 39, 4300 Karlovo, Bulgaria  
 Tel/Fax (359)-335-3432 E-mail : cej.peter@sf.cit.bg

### Eric Sottas 에릭 소타스

가톨릭의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인 Pax Romana 국제가톨릭문화지식인운동(ICMICA)

의 사무총장 출신으로 현재 고문 관련 국제인권단체인 OMCT/SOS Torture의 소장.  
 주소 : OMCT Case postale 119, Rue de Vermont 37-39, CH-1211, Geneva 20-CIC,  
 Switzerland  
 전화 : (41-22)-733-3140 팩스 : (41-22)-733-1051

### **Hernani da Silva 하나니 다 실바**

마카오의 동티모르 인권과 독립을 위한 운동단체 회원.  
 주소 : Rua das Lagos, Edf. Hong Cheong Garden, Cioco 3, 8-X, Taipa, Macau, via  
 Hong Kong  
 전화 : (85-3)-832-366

### **James Ross 제임스 로스**

1960년 미국 출신 변호사로 현재 프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인권대책위(Human Rights Task Force on Cambodia)에서 활동. 88년부터 93년까지 뉴욕 주재 인권법률가위원회(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의 아시아 국장 역임.  
 주소 : P.O.Box 2362 Phnom Penh 3, Kingdom of Cambodia  
 전화/팩스 : (855) 23 27119

### **James Silk 제임스 실크**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로버트 케네디 기념인권센터(Robert F. Kennedy Memorial Center for Human Rights)에서 소장으로 있다. 센터는 故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을 추모하기 위하여 1988년 설립.  
 주소 : 1206 30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전화 : (202) 333-1880 ext. 236 팩스 : 342-7445 E-Mail : rfkmem@igc.apc.org

### **Jan Hordan 얀 호단**

노동조합과 노조교육단체의 연합체인 팔메 재단(The Olof Palme International Center)의 아시아 아프리카 프로그램 국장.  
 주소 : P.O.Box 3221, S-10364 Stockholm, Sweden  
 전화 : (46-8)-791-7759 팩스 : (46-8)-102375 E-mail: opckansli@nn.apc.org

### **Jaran Cosananund 자란 코사나눈드**

태국의 램캄행 대학 법학 교수이며 Forum-Asia 사무총장 고문으로 있다.  
 주소 : 120/223 Soi Prem-ruethai 3, Ram-indra Rd, Kannayow, Bangkok, Thailand  
 전화 : (66-2) 519-0699 팩스 : 318-0915 E-Mail : chalida@mozart.inet.co.th

### **Kazuyuki Azusawa 가즈유끼 아주사와**

변호사. 일본변호사협회(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 JFBA)의 인권연락사무소장.  
 주소 : Hanei Building, 1-3 Kanda Sudō-cho, Chiyoda-ku, Tokyo, Japan  
 전화 : (81-3) 3255-8877 팩스 : (81-3) 3255-8876

### **Kinhide Mushakoji 킨히데 무자코지**

현재 오사카 아태인권정보센터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HURIGHTS)의 의장이자 유엔 대학 부총장 역임.  
 주소 : HURIGHTS, 15th Floor 2-1-1500, Benten 1-chome, Minato-ku, Osaka 552, Japan  
 전화 : (81-6) 577-3578 팩스 : (81-6) 577-3583

### **Leandro Despouy 레안드로 테스포이**

1947년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현재 유엔의 비상사태(U.N. Special Rapporteur on State of Emergency)하의 인권침해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1984년부터 94년까지 10년간 유엔의 인권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소 : Estados Unidos 768, apt. 18 1101 Buenos Aires, Argentina  
 전화 : (541)-271-860

### **Lim Shu-ryang 림 슈량 林書揚**

1926년 대만에서 출생, 사회주의계열 청년운동을 하다 1950년대 백색테러가 난무할 때 구속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음. 34년 7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난 1984년, 대만 '최고'의 장기수이자 최후의 정치범으로 석방됨. 출옥 이후 다시 활발한 인권운동을 펼쳐 왔으며 다양항 저술활동을 함. 주요 저작으로 『2.28에서 50년대의 백색테러』가 있으며 1987년 대만지구정치수난인호조회 창설하여 초대 회장을 하였으며 현재

<노동인권회>와 <대만통일연맹>의 고문이며 <대만노동당> 부당수임.

주소 : 労動人權協會, 3/F-2, No. 76 Sec. 3, Roosevelt Rd. Taipei, TAIWAN

팩스 : (886) 2365-0412

### **Lopeti Senituli 로페티 세니툴리**

태평양 지역의 비핵화를 위해 일하는 태평양자료센터(Pacific Concerns Resource Centre, PCRC) 소장. 피지의 교육부장관과 노동부장관 역임.

주소 : PCRC, 83 Amy Street, Toorak, Private Mail Bag, Suva, FIJI

전화 : (679)-304-649 / 팩스 (679) 304-755

### **Margaret Blanchard 마가렛 블랜차드**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교수. 미국의 언론학계의 권위자로 미국에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전문가로 활동. 주요 저서로는 현대 『혁명적 불꽃: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Revolutionary Sparks: Freedom of Expression in Modern America)』(1992) 등이 있음.

주소 :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CB #3365, Howell Hall, Chapel Hill, NC 27599-3365, USA

전화 : (919) 962-1204 팩스 : (919) 962-0620

### **Pierre Robert 피에르 로버트**

1989년부터 국제앰네스티 런던 국제사무국에서 근무. 90년 초 한국 담당 연구원으로도 있었고,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로그램 담당자.

주소 : Amnesty International, 1 Easton Street, London WC1Z 8DJ, U.K.

전화 : (44-171) 413-5665 팩스 : (44-171) 956-1157

### **Ravi Nair 라비 네이**

1954년생. 인도의 대표적인 인권활동가로 지금까지 무려 28번이나 구금된 '기록'을 지니고 있다. 1986년부터 89년까지 아태지역 담당자로 런던의 국제앰네스티 본부에서 일했으며 89년부터 91년까지 9명의 국제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현재 뉴델리에 있는 남부아시아인권자료정보센터(South Asia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er, SAHRDC)의 소장.

주소 : SAHRDC, 6/105, Kaushalya Park, Hauz Khas, New Delhi 110-016, India

전화 : (91-11) 686-5736 팩스 : (91-11)-686-5736 E-mail : Sadc@unv.ernet.in

### **Rene V. Sarmiento 르네 사르미엔토**

변호사. 필리핀인권운동연합(Philippine Alliance for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부회장.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지부의 대표로 있다.

주소 : PAHRA, Room 403, FMSG Bldg., 9 Balete Drive Cor., 3rd Street, New Manila, Quezon City 2112, Philippines

전화/팩스 : (632) 721-7814

### **Robert Reid 로버트 리드**

아태지역노동자연대(Asia-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s, APWSL)의 Coordinator

주소 : P.O. Box 11 123, Wellington, New Zealand

전화 : (644)385-8264 팩스 : 384-8007 E-Mail : robert@apwsl.wgtn.planet.co.nz

### **Ross Daniels 로스 다니얼스**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집행위원회(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의장. 호주 출신으로 수십년간 국제앰네스티를 통한 인권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호주 브리스베인의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사회과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소 : Amnesty International, 1 Easton Street, London WC1X 8DJ, U.K.

전화 : (44-171) 413-5665 팩스 : (44-171) 956-1157

### **Ryutaro Nakakita 류타로 나카기타**

변호사.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주소 : 大阪 北區 西天滿 4-8-2 北 B/D, 本館 603 號

전화 : (81-6)-364-0123 팩스 : (81-6)-364-5247

### **Sandra Coliver 샌드라 콜리버**

미국의 변호사로 표현의 자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인권단체인 검열반대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Against Censorship) -세계인권선언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제19조를 의미하여 보통 "Article 19"이라고 부름 - 의 법률프로그램 국장.

95년 9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채택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국제인권회의 조직 책임자. 주요 저서로 『선거캠페인 보도를 위한 지침

서』, 『언론법과 관행: 유럽과 다른 민주국가의 언론자유에 대한 비교 연구』,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등이 있다.

주소 : Article 19, Suite 700, 1601 Connecticut Ave., NW, Washington, DC 20009,  
USA

전화 : (202) 328-8348 팩스 : (202) 328-8592

### **Sivarasia Rasiah 시바라시아 라시아**

현재 쿠알라 룸푸르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말레이지아 인권단체인 SUARAM (Suara Rakyat Malaysia or Voices of the People of Malaysia)의 창설자의 한사람이다. 또한 Fersauran HAKAM (the 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of Malaysia)와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Bar Council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소 : 11 Jalan 1A/71E, Jalan Carey 46000 Petaling Jaya, Malaysia

전화 : (603)-794-3525 팩스 : (603)-794-3526

### **TSAI Hong Jang 촉이 홍장**

현재 대만인권협회(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사무국장. 변호사로서 민주진보당 후보이며 1991년 국회의원과 1993년 대만 지방의회에 진출한 바 있다.

주소 : TAHR, 11, Lane 8, Hsin-Chien Street, Chiayi City, Taiwan

전화 : (88-65) 236-5632 팩스 : (88-65) 236-5342

### **Victor P. Karunan 빅토르 카루난**

현재 Forum Asia의 비상근 연구원이며 동남아시아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자문역할을 수행. 국제가톨릭문화지식인운동(Pax Romana ICMICA) 사무총장을 역임.

주소 : 67/054, Muang Ake, Phase 2, Lak Hok, Muang District, Pathum Thani 12000,  
Thaniland

전화 : (66-2) 997-6650 팩스 : 564-0235 E-mail : karunan@mozart.inet.co.th

### **Xiao Qiang 샤오 취양**

미국 뉴욕에 있는 중국인권단체인 Human Rights In China (HRIC) 소장. 중국 대륙 출신으로 미국에서 천체물리학 박사과정을 이수하다가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자 북경으로 돌아가 학생운동에 참여. 이후 미국에 돌아와 계속해서 인권운동을 펼쳐옴.

주소 : HRIC 485 Fifth Avenue, 3rd floor, New York, NY 10017, USA

전화 : (212) 661-2909 팩스 : (212) 972-0905 E-mail : hrchinain@igc.apc.org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주소**

###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

서울 충정로 우체국 사서함 52호  
T. (02)393-4662 F. 364-607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T. 522-7284 F. 522-7285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8-2 백호빌딩 4층  
T. 747-4364 F. 747-8363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T. 715-9185 F. 715-9186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울 종로구 창신동 592-7  
T. 763-2606 F. 745-5604

### **불교인권위원회**

서울 종로구 화동 138-12  
T. 734-6401 F. 734-6402

### **인권운동사랑방**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T. 715-9185 F. 715-9186

###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서울 종로구 창신2동 651-30  
T. 763-4700 F. 743-2835

### **천주교인권위원회**

서울 중구 명동2가 가톨릭센터 3층  
T. 777-0643 F. 777-6267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타**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708호  
T. 744-3717 F. 766-5528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인쇄일 1996년 10월 7일  
발행일 1996년 10월 10일

발행처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주 소 137-070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연락처 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비매품